

현안분석 2007-

비교법제 연구 07-01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2)

— 러시아의 FTA —

김동훈 · 김봉철 · 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2)

— 러시아의 FTA —

A Study on FTAs of BRICs Countries (2)
- An Legal Analysis of Russia's FTAs -

연구자 : 김동훈(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Kim, Dong-Hoon
김봉철(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연구원)
Kim, Bong-Chul
류창호(부연구위원)
Ryu, Chang-Ho

2007. 4. 30.

국문 요약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 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 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도 바로 그러한 예이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서구의 시장경제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시장경제의 충격, 인플레이션과 자본의 집중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세계무역질서 또는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건재하다.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에 관련하여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자원의 수출과 국내 시장의 확대와 아울러 구소련 소속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새롭게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1992년 창설된 CIS(독립국가연합) 12개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러시아가 지역경제체제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CIS는 각국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체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 이것은 CIS의 출현이 구소련의 붕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CIS 회원국들의 양자간 FTA 체결과 러시아 주도의 소규모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CIS 전체의 경제통합과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정의 체결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어왔다. 이것은 CIS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으로 발효되지 못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주도의 CIS 체제에 대한 반발도 있다.

러시아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은 대부분 CIS 소속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FTA는 대부분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등 러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CIS의 틀을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는 WTO의 옵저버 국가로서, 현재까지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WTO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WTO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는 위의 혜택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FTA의 근거규정으로 허용조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를 체결 당사국으로 포함한 수개의 복수국간 FTA가 WTO에 통보된 바가 있다.

※ 키워드 :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 개발도상국, 독립국가연합,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관세 제거, 무역자유화, 허용조항.

Abstract

RTA(Regional Trade Agreement) and FTA(Free Trade Agreement) recently became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vast majority of WTO members are party to one or more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surge in RTAs has continued unabated since the early 1990s until now.

On the other hand, we can hear often another new term, BRICs(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No less a financial judge than the Goldman Sachs investment bank concluded in its 2003 report that the economies of the BRICs could surpass the G6 in less than 40 years, leaving only the US and Japan among the globe's six largest economies.

After that, much attention has been plac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BRICs, bu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whether these countries will be significant economies in the coming decades. These countries have quite different economic histories and strategies for stimulating economic growth, but all have seen high growth rates and have the potential to continue.

Russia holds a wealth of natural resources. After communism fell in 1989, Russia wanted to encourage capitalism quickly, and privatised state-owned industries all at once. Most prices were released from government control one night in 1992. Inflation followed shortly after, so monetary policy was tightened.

The Russian economy of today is smaller than the one before communism ended, even though it is growing at a good clip each year. This is because there is much corruption withi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nd those

who had the resources and wealth during communism are unwilling to give them up. So the resources were bought cheaply within the country and then sold outside of the country at market prices, creating hefty profits for a few wealthy people. And since monetary policy was tightened in the face of inflation, it made it more expensive for households to borrow money. The financial institutions were not stable enough to handle the sudden privatization, and few had enough capital to provide consumers with the amounts they wante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is a confederation or alliance, consisting of 12 former Soviet Republics. The creation of CIS signaled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according to leaders of Russia, its purpose was to 'allow a civilised divorce' between the Soviet Republics. However, many observers have seen the CIS as a tool that would allow Russia to keep its influence over the post-Soviet states. Since its formation, the member-states of CIS have signed a large number of documents concerning integration and cooperation on matters of economics, defense and foreign policy.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CIS could be viewed a successor entity to the Soviet Union, insofar as one of its original intents was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disassembly of that state. Although the CIS has few supranational powers, it is more than a purely symbolic organisation, possessing coordinating powers in the realm of trade, finance, lawmaking and security. The most significant issue for the CIS is the establishment of a full-fledged free trade zone or economic un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to have been launched in 2005. It has also promoted cooperation on democratization and cross-border crime prevention. However, the free

trade zone of CIS could not implement.

Russia has been one of the observers of WTO since Uruguay Round. The WTO Agreemen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which give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rights and which give developed countries the possibility to treat developing countries more favorably than other WTO Members. These are calle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These special provisions include, for example, longer time periods for implementing Agreements and commitments or measures to increase trading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can also receive technical assistance. The delivery of WTO technical assistance is designed to assist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djust to WTO rules and disciplines, implement obligations and exercise the rights of membership, including drawing on the benefits of an open,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official name of Enabling Clause in WTO legal system is ‘the 1979 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decision by GATT contracting parties in 1979 allows derogations from the MFN treatment obligation of Article I of the GATT.

The conditions that RTAs under Enabling Clause must meet are less demanding and less specific than those set out in Article XXIV of GATT. In particular, its paragraph 2(c) permits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 goods trade. It has continued to apply as part of GATT 1994 under the WTO, and is therefore still in force. The RTAs under the Enabling Clause include COMESA, MERCOSUR and AFTA.

Through analysing the articles of WTO agreements on FTAs, We can detect the problems of the articles that could cause trade disputes. These investigations would be grounding to make legal solutions. Especially speaking, the Enabling Clause for developing countries is still ambiguous in legal point of view.

※ Key words : FTA, RTA, CIS, BRICs, Russia, WTO, Regionalism, CRTA, Developing Country, GATT, Enabling Clause.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7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 1 절 연구의 배경	19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21
제 2 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	23
제 1 절 FTA의 법적 구조	23
1. 법적 성격 및 근거	23
2. 양허와 유보사항	24
3. 원산지규정	26
4. 분쟁의 해결	28
제 2 절 FTA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32
1. GATT 제24조	32
(1) GATT 제24조의 내용	32
(2) GATT 제24조의 기원	35
(3)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37
2. 허용조항	38
3. GATS 제 5 조	39
4. 근거규정의 문제점	40
5. 지역주의 근거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의	42
(1) GATT 제24조	42
(2) GATS 제 5 조	45

제 3 절 WTO의 FTA 규제 노력	46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46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기능	46
(2)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와 견해의 대립	47
(3)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49
2.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분쟁사례	49
(1)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분쟁의 주요 내용	49
(2) 터키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사건	51
(3)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	53
(4) 지역무역협정 분쟁에 대한 기타 WTO의 판정	55
 제 3 장 BRICs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	 59
제 1 절 BRICs	59
1. BRICs의 출현과 의미	59
2. BRICs 경제의 성장원인	61
(1)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62
(2)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63
(3) 인구증가	64
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65
4. BRICs 사이의 협력 확대	67
5. BRICs와 한국경제	68
(1) BRICs와의 경제협력 현황	68
(2) 협력의 주요 특징	70
 제 2 절 러시아	 72
1. 러시아의 경제와 무역	72
2. 한국과의 무역관계	73

제 4 장 러시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75
제 1 절 CIS의 설립	75
1. 독립국가연합(CIS)	75
(1) CIS의 출현	75
(2) CIS의 성격과 평가	75
2. CIS 체계 내에서 체결된 협정들	76
3. CIS 설립 협정문과 의정서	79
4. CIS 현장	80
5. 러시아 이외의 CIS 국가들이 체결한 FTA	83
6. CIS 국가들의 자유무역상황	85
7. CIS의 발전과 현재의 상황	86
제 2 절 러시아의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	88
1. CIS FTA	88
2.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91
3.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93
4. 러시아-그루지아 FTA	95
제 3 절 러시아의 기타 지역협력	97
1.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97
(1) EAEC 설립협정	97
(2) EAEC의 발전	99
2. 흑해 경제협력	100
3.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102
4. 상하이 경제협력	103
5.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104
6. 단일시장지대	105

제 4 절 러시아 지역무역협정의 특징	106
1. CIS 체제와의 연관	106
2. 러시아 주도의 협정체결	107
3. 경제외적인 정치적 요소의 작용	108
4. 기타 특징	109
제 5 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111
제 1 절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의 특별취급	111
1. WTO와 개발도상국	111
(1)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111
(2) 무역 및 개발 위원회	112
(3)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113
2. WTO 출범 후의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한 대우	113
3.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허용조항	114
제 2 절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허용조항의 적용요건 검토	117
1. WTO 회원국	117
2.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118
3. 내용상의 검토	118
제 6 장 결론 및 요약	121
참 고 문 헌	125
■ 부 록	
[부록1]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IS	131
[부록2] PROTOCOL TO THE CIS AGREEMENT	137

[부록3] CHARTER OF THE CIS	139
[부록4] CIS FTA	161
[부록5] AGREEMENT ON FOUNDATION OF EAEC	177
[부록6] ARMENIA-RUSSIA FTA	193
[부록7] GEORGIA-RUSSIA FTA	205
[부록8] KYRGYZ-RUSSIA FTA	215

표 차례

< 표 1 >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	33
< 표 2 > BRICs의 경제성장을 전망	60
< 표 3 > BRICs와 한국의 2005년 경제통계 비교	61
< 표 4 > BRICs의 개혁개방정책	62
< 표 5 >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규모 변화 (단위: 달러)	74
< 표 6 > CIS 체제 설립을 위한 협정과 러시아 중심의 지역무역협정	77
< 표 7 > CIS 설립협정의 체결국과 발효일자	80
< 표 8 > CIS 현장의 기본구조	81
< 표 9 > 러시아 이외 주요 CIS 국가들의 양자간 FTA	84
< 표 10 > CIS 회원국들이 참여한 주요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	86
< 표 11 > CIS FTA의 기본 구조	88
< 표 12 > CIS FTA 예외조항의 내용	90
< 표 13 > 러시아의 주요 양자간 FTA 협정문의 유사 조항 비교	95
< 표 14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협정문의 기본 구조	97
< 표 15 > BSEC 기구 현장의 구조	100
< 표 16 > 허용조항을 근거로 GATT 및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116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국제무역질서에는 WTO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부터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확산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에 대비되는 이른바 지역주의(Regionalism)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규범인 까닭에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체제의 부적절성 내지 불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FTA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FTA를 체결하는 주체들은 협정을 통하여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역내시장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역내무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반면에 이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여 역내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감수해야 하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FTA가 체결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연계현상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가 300여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범형태는 WTO와 견줄만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규범의 두 축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수의 국가들

은 대부분 이 두 체제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기존의 FTA는 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규범에 관한 공유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의 FTA는 무역규범뿐만 아니라 투자 및 경제일반분야,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까지 포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의 다자간 협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FTA의 체결은 단순히 무역분야에서의 관세철폐에서 벗어나 당사국 사이의 경제외적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도 마무리 된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MERCOSUR, 일본, 인도 등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거나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협력체들과의 FTA 역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국제경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BRICs 국가들 역시 FTA 확산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BRICs 국가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 또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주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와 BRICs라는 두 단어의 연결점을 법적 관점에서 찾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자원의 수출과 국내 시장의 확대와 아울러 구소련 소속 국가들과의 CIS 연대를 통하여 새롭게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CIS 전체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FTA가 발효되지 못하였고, CIS 회원국들의 양자간 FTA 체결과 러시아 주도의 소규모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러시아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은 대부분 CIS 소속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FTA는 대부분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등 러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CIS의 틀을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RICs의 FTA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의 FTA 및 그 정책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장래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확대와 경제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연구시리즈의 주된 목적은, BRICs 국가들이 체결한 FTA에 관하여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WTO 규범체제와 연계하여 그 특성 및 법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FTA에 관한 법적인 분석과 FTA에 관련한 WTO 체제의 규범들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다만, FTA 또는 지역주의 일반에 관한 법적인 연구내용을 다른 본 연구시리즈들과 적절히 분배하여,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피하면서도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FTA를 포함한 각종 지역무역협정들은 그 목적과 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하고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

규제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장벽 제거와 경제협력’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지역무역협정들을 넓은 의미에서 FTA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러한 협정들의 협정문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시리즈 중에서 러시아의 FTA 분석에 관한 제 2 편은,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일반에 관한 법적 분석에서 출발한다. 이후 러시아의 법적 지위와 상황 등을 BRICs 전체 및 WTO 체제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또한 러시아가 CIS를 중심으로 체결한 각종 FTA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무역협정들에 관하여 전면적인 법적 분석을 통하여, 러시아 FTA의 특성을 도출한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러시아의 탈 CIS 지역경제협력 현상에 관해서도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WTO의 개발도상국 FTA에 관한 특별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의 내용을 분석하고, 러시아 또는 CIS의 FTA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적용요건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제 2 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

제 1 절 FTA의 법적 구조

1. 법적 성격 및 근거

FTA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의 확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국제법적 기본 단위인 국가¹⁾가 체결하는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²⁾ 따라서 FTA는 조약의 성립요건³⁾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국제경제규범으로 작용한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협정의 서명권자는 국가원수이거나 국가원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FTA 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명 후 협정 체결국의 국가원수가 FTA의 효력에

1) 물론 국가 이외에도 지역협력체가 FTA를 체결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FTA의 체결에 대하여 소속 국가가 권한을 부여하고 국내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므로,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2) 조약은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nvention), 헌장(charter), 의정서(protocol) 등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체결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제 2 조 제 1 항에 따르면,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한미FTA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2006. 12, 15면].

3) 조약의 성립요건은 조약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질 것,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자가 조약체결의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대표자 사이에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할 것, 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절차에 따라 체결될 것 등이다[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849면].

국가가 구속받겠다는 비준을 하여야 한다.⁴⁾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비준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⁵⁾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체결된 FTA는 국내법적인 근거와 효력을 가진다.⁶⁾ 미국이나 EU와 같이 FTA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별도의 국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FTA에 대한 WTO 차원의 근거규정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합의된 허용조항(Enabling Clause), WTO 설립협정 부속서 1A 중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체결되는 FTA는 당사국이 아닌 국가와의 역외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가 FTA의 체결로 인하여 그 이전의 규제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야 하고, FTA의 당사국 사이의 관세나 기타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FTA를 체결한 당사국은 즉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2. 양허와 유보사항

각국이 FTA를 체결할 때에는, 당사국의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장벽의 제거와 자유화가 이상적이다. 이에 관하여 GATT 제 24조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4)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3조].
 - 5)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
 - 6)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당사국은 나름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각국의 취약산업 보호 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협상의 핵심이다. 실제로 FTA를 체결하는 당사국들이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유지하거나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FTA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각국은 협상에서 무역장벽의 제거와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협상의 결과로 협정의 내용을 합의하는 양허(讓許, concession)를 하고, 양허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FTA를 체결한다.

양허의 일부로서 각국의 산업구조 또는 무역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FTA의 효력발생을 미루어 놓은 사항을 유보사항이라 한다. 유보사항의 유형은 다양하다. 어느 분야를 무역자유화 범주에서 제외하여 기존의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을 조절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예기간을 두어 일정 시점까지 무역장벽을 유지하거나 다소 완화하였다가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하기도 하고, 단계별로 점차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⁷⁾

당사국은 유보사항을 통해서 일정 분야 또는 품목을 FTA 체결 이후의 협상 대상으로 만들거나 그 효력 발생의 시점을 미루어, 합의한 기간 동안 관련분야 국내산업의 안정을 꾀한다. 유보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역내무역에 장애물이 남아있어 FTA의 효과가 적을 것이다. 반면에 FTA의 유보사항이 적어질수록 무역장벽이 축소되어 FTA의 본래 의미인 역내무역자유화를 이룰 수 있다.

FTA의 양허사항 또는 유보사항의 내용은 당사국들이 어떠한 산업 부분에 민감한가,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가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

7) 하나의 FTA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유보사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협상을 통한 신축적인 무역규제가 가능하다.

가, 또는 당사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WTO의 규범과 규제도 당사국이 양허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3. 원산지규정

FTA의 원산지규정은 FTA의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다양한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있어서도 주요한 쟁점사항이 된다. FTA의 원산지규정은 협정 당사국의 산업경쟁력과 무역규모를 기초로 하여 무역활성화와 우회수입방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⁸⁾

예를 들어 NAFTA의 원산지규정은 협정의 당사국 내에서 전부 취득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에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역내산이 아닌 원자재를 사용하여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그 원자재가 통일관세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HS)에 근거한 세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역내국의 원산지가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상품의 역내부가가치가 거래가격의 60% 이상이거나 순비용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NAFTA의 원산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⁹⁾

8)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이 완성되는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과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라고 결정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실질적 변형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나누어진다.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criteria)은 제품의 세번과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이 다른 경우에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가공공정기준’(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은 각 품목별로 기술적으로 주요한 제조 또는 가공의 공정을 열거하여 주요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은 부가가치가 일정한 비율 이상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이다.

9) NAFTA 제401조. NAFTA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 외에 섬유, 의류, 자동차 등

FTA의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가장 큰 기능은 역외국에서 역내국을 통한 우회적인 수입, 즉 무역굴절현상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FTA에서 원산지규정이 없을 경우, 역외국들은 협정의 당사국 중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통해서 역내시장에 진출하여 다른 당사국으로 상품을 재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낮은 관세율이 FTA 전체의 역외국에 대한 실질적인 대외관세가 되며 다른 국가들의 대외관세는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FTA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는데, 당사국은 협정을 통하여 원산지의 선정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보유하고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여 자국의 대외관세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의 수입국은 대외관세가 낮은 FTA의 다른 역내국을 통하여 수입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규정을 근거로 역외국 상품에 대한 대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당사국이 각기 다른 대외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세동맹과의 차이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

원산지규정은 비관세장벽으로서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즉, 정상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은가 하는 점과 보조금의 지급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상품의 생산과정이나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반덤핑조치나 보조금 상계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 원산지의 파악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규정을 근거로 역외상품으로 판단한 경우에, WTO 반덤핑협정과 같은 다자주의 체제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역내상품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FTA가 규정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FTA가 역외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통일하여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역외상품으로 결정된 상품에 대해서도

에 대한 다양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WTO의 무역구제조치가 아닌 FTA에 의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¹⁰⁾

4. 분쟁의 해결

FTA는 공통적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분쟁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FTA 자체가 각종 무역분쟁의 주요 대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보조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통관절차,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경제관계강화 무역협정(ANCERTA)과 칠레-캐나다 FTA 등은 반덤핑조치를 상호 배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국 사이의 반덤핑조치에 관한 분쟁이 인정되지 않는다.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각각의 협정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일부 FTA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는 우선 FTA에 근거한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WTO를 통한 분쟁해결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AFTA의 경우는 분쟁이 발생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이 구성되며, 이 패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정을 내린다.¹¹⁾ 그러나 만약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¹²⁾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10) 이러한 경우는 원래의 FTA에서 그 의미가 발전하여, 공동의 대외무역정책을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한 형태로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11) 1996년 미국과 멕시코의 토마토 분쟁에서, 플로리다 토마토 재배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1996년 초 멕시코 생산자들을 반덤핑규정 위반으로 제소했고, 불과 몇 개월 뒤 NAFTA 분쟁기구는 파운드 당 20.68센트 이하로 토마토를 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제한 대미 수출을 멕시코 수출업자에게 허용해 주었다[정인교, □□FTA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61면].

12)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이 경우 FTA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NAFTA의 분쟁해결제도는 협정 당사국의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규범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측면 때문에 다른 FTA의 분쟁해결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자주의 분쟁해결절차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¹³⁾ NAFTA의 분쟁해결제도를¹⁴⁾ 통하여 FTA과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여러 분야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¹⁶⁾ WTO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쟁에 관하여 하나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통합되어 있다. 분쟁해결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각각 다른 원리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이용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사국이 보다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NAFTA의 분쟁해결제도는 NAFTA 체결국의 조치에 대하여 자국법원의 사법심사를 대체하는 패널¹⁷⁾ 및 패널결정에 대한 재심제

분쟁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 또는 기각하며, 판결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고 대상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충지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13)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전반적으로 외교적인 분쟁해결보다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존의 GATT와 WTO 분쟁해결절차보다 사법적인 색채가 짙다.

14) NAFTA의 분쟁해결의 단계는, 우선 당사국의 협의를 거친 후, 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재의 단계 다음으로 패널 설치(제2006조~2008조)를 하게 된다.

15) 박노형, 『NAFTA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 □□이베로 아메리카연구소□□5집,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94, 244면.

16) NAFTA에는 일반적인 분쟁 해결제도에 더하여 투자에 관한 분쟁, 금융서비스에 관한 분쟁,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분쟁, 노동협력에 관한 분쟁, 환경협력에 관한 분쟁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David A. Gantz,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American-Canadian Studies, Vol. 9, 2000. p. 15].

17) NAFTA 제1904조.

도로서 특별이의심판위원회(Extraordinary Challenge Committee: ECC)¹⁸⁾의 설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패널의 심사¹⁹⁾는 사실상 당해 조치를 행한 NAFTA 체결국 국내법원의 심사에 준하게 되어 구속력을 가진다.²⁰⁾ 이것은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절차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즉, NAFTA는 체결국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인에게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NAFTA가 규정하는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정부사이에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²¹⁾ 이에 반하여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의 조치가 WTO의 실제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에 합치하는지 검토하는 기회가 되지만 NAFTA의 절차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즉 회원국의 국내법이 관련 WTO 규범에 일치하는가를 판단할 뿐이다.

셋째, NAFTA의 패널은 무역규범에 정통한 현직 또는 전직 판사 등 법률가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 요구되며, 그 패널의 위원장은 반드시 법률가이어야 하지만 WTO 협정의 패널은 반드시 법률가들로 구성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WTO 패널의 결정은 법적 논

18) NAFTA 부속서 제1904.13조.

19) 패널절차는, 당사국이 합의한 명부에서 선임한 5인으로 패널을 구성하고(NAFTA 제2011조) 이 패널이 사실 확인 및 피제소국의 협정상 의무위반 행위여부를 결정하여 권고안을 작성한다[NAFTA 제2016조]. 패널은 최초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제시하여 의견을 접수한 후 최종 보고서를 분쟁당사국 및 무역위원회에 제시하는데 [NAFTA 제2017조], 분쟁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방은 분쟁에 따른 피해상당액의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NAFTA 제2018조].

20) NAFTA 제1904조. 패널로 하여금 역내국의 국내법원을 대신하여 통상기관이 내린 조치들이 그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래 각국의 행정기관이 내린 무역조치의 사법적 심사에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또 상대국 법원에서 심사를 받는데 따르는 불이익을 감소시켜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5, 385면].

21)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통상법에 의하여 체결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재하거나 미국 국민에 의한 사적인 구제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한국법제연구원, □□NAFTA와 통상분쟁의 해결□□, 1993, 13면].

리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NAFTA의 패널은 분쟁당사국 국민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WTO의 패널은 분쟁당사국 국민으로 구성될 수 없다.

다섯째, NAFTA의 패널절차는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이 원하지 않는 한 비공개이지만, WTO의 경우는 예외 없이 공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국은 분쟁의 해결과정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비공개에 의한 분쟁해결은 이러한 경우에 유용하다.

여섯째,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단계마다 법정 시한이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늦어도 315일 내에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들은 큰 의미를 가진다.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진행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지 아니하였으나,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NAFTA와 마찬가지로 단계마다 법정 시한을 명문화하여 신속성의 측면을 다소 보장하였다.²²⁾

NAFTA의 중요성을 더해주는 것은 해당 분쟁이 NAFTA 및 다자주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NAFTA와 다자주의의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²³⁾ 물론 관할권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한 NAFTA와는 다르게 FTA의 분쟁해결절차만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다자주의의 분쟁해결절차만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FTA의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 다자주의 규범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자주의 규범이 다른 규범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WTO의 일관된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FTA의 분쟁해결 절차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²⁴⁾

22) Ernst-Ulrich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London, 1997, p. 184.

23) NAFTA 제2005조.

24) 박노형, 앞의 논문, 245면.

제 2 절 FTA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1. GATT 제24조

(1) GATT 제24조의 내용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TA)²⁵⁾에 대한 WTO의 근거규정은 GATT 제24조와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양해(諒解, Understanding), 개발도상국을 위한 허용조항(許容條項, Enabling Clause)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 5 조가 있는데,²⁶⁾ 가장 중심이 되는 조항은 GATT 제24조이다.²⁷⁾ 다음은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이다.

25)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브라질의 FTA 제 2 장]을 참고할 것.

26) GATT와 WTO 등 다자주의 체제가 FTA 체결과 같은 지역주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이유에 관하여,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자주의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간의 무역을 통합하고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적 통합에 의하여 무역과 생산 요소의 흐름이 보다 자유롭게 되므로, 경제적 의미에서 이들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 처럼 되는 ‘준국가적인’ 지위는 다른 다자주의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1930년대 유행하던 차별적인 양국간 주의(양국 사이에는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심한 차별이 발생)로 역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셋째, GATT 제24조 등 지역주의 규정은 다자주의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추구’에 보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25~26 ; 노현수, 『WTO 체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확산의 효과』,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2000, 264~265면에서 재인용].

27) 지금까지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2006년 3월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은 193건인데, 그 중에서 GATT 제24조에 근거한 것이 135건이다. 이밖에 GATS 제 5 조에 근거한 지역무역협정은 36건이고, 허용조항에 근거한 경우는 22건이다[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ummary_e.xls].

< 표 1 >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

GATT 제24조	내 용
제 1 항 /제 2 항	제24조는 동일한 관세영역에 적용되며, 서로 상이한 관세영역은 비록 동일한 관세주권에 속하더라도 다른 체약국으로 간주한다.
제 3 항	제24조는 인접국 사이에 국경인근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 4 항	자발적인 협약으로 인하여 보다 밀접한 통합과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며, 관세동맹이나 FTA의 목적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지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제 5 항	관세동맹이나 FTA 그리고 잠정협정에 있어서 협약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가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일 수 없고, 잠정협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설립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항	제 2 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관세의 인상이 관세동맹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되었을 때에는 제28조의 보상과 교섭절차가 적용된다.
제 7 항	관세동맹이나 FTA 또는 이를 위한 잠정협정에 가입하고자 결정한 회원국은 이를 WTO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WTO는 이러한 협정의 검토 후 권고안을 작성하여 협정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당사국은 이러한 권고안에 따른 수정을 하여야만 협정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 8 항	관세동맹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한 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허용은 제외)는 구성지역의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된다. 관세동맹국은 제 9 항을 조건으로 비동맹국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 및 기타 상업

제 2 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

	적 규제를 적용한다. FTA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허용을 제외하고)가 구성지역의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되는 것이다.
제 9 항	제 1 조 제 2 항에 규정된 특혜는 관세동맹 또는 FTA의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협상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제10항	제 5 항부터 제 9 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세동맹이나 FTA 설립을 위한 제안도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항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제12항	각 회원국의 지방정부가 위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GATT 제 1 조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 대해 조건 없이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24조를 통하여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관세동맹이나 FT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24조는 일부 국가들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들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FTA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하거나 이를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외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²⁸⁾ 지역무역협정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하며, 역내국 사이의 관세나 기타 상업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관하여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28) GATT 제24조 원문에서는 ‘관세와 다른 상업적 규제’(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time)에 지역무역협정을 완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외에도 만일 특정 WTO 회원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역외국에게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보다 높은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GATT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역외국과의 보상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TT 제24조 제 7 항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즉시 WTO 상품무역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에 통보해야 하고, 잠정협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제출한 계획 또는 일정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상품무역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보고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²⁹⁾

이와 같이 역내무역장벽이 철폐되고 동시에 역외에 대한 무역장벽을 과거보다 높이지 않는 한, 관세동맹 또는 FTA의 형태를 취하는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 의하여 WTO 체제 안에서 그 효과가 인정된다.

(2) GATT 제24조의 기원

GATT 제24조의 기원은 하바나 헌장(국제무역기구 헌장)³⁰⁾의 협상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하바나 헌장의 협상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제 2 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주

29) 원래 GATT 규정에는 ‘채약국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의 전문에 따라 ‘WTO 상품무역위원회’로 변동되었다.

30)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은 1948년 3월 쿠바의 하바나(Havana)에서 개최된 ‘무역 및 고용에 관한 UN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설립을 위한 헌장의 초안으로 합의되었다. 하바나 헌장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고용과 경제활동, 제한적 거래관행, 경제개발과 재건, 국제물품협약 등과 같은 국제경제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로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었다.

의에 수용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국제무역기구에 무조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무역기구 추진과정에서 미국은 관세동맹에 관한 예외를 제안하였고, 프랑스와 베네룩스 3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제안은 유럽의 경제회복을 위해 최혜국대우 원칙이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일시적 연기라고 하기에는 GATT 제24조의 내용이 불충분하였다.³¹⁾

관세동맹 이외에도 FTA가 GATT의 지역주의 조항에 포함되었다. 하바나 현장의 협상에서 FTA를 GATT에 포함시키자는 발의를 하였던 국가는 개발도상국인 레바논과 시리아였다.³²⁾ 당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선택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관세’가 국내 경제의 운용과 국가 수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무역규제 수단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들이 관세동맹의 중심요소인 공동대외관세라는 특별한 조건을 회피하면서도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주의의 허용을 연기 위해서 FTA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역주의 조항의 변화는 FTA의 추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외에도 협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다.³³⁾ 결국 지역

31)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 지역주의 조항의 기원: 국제경제법 형성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35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337~338면.

32) 레바논과 시리아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의 FTA만을 언급하였으나 이 제한은 소위원회에서 삭제되었다.

33)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최초로 제안한 내용에 부가된 GATT 제24조의 규정과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구갑우, 앞의 논문, 339면].

1. GATT 제24조 제 5 항: 미국이 제안한 관세동맹에 FTA가 추가되어 하바나 현장에 처음 등장하였고, 잠정 협정에 관한 내용은 제네바 회의에서 등장하였다.
2. GATT 제24조 제 6 항: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보상과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 GATT 제24조 제 7 항: 체약국단에 대한 통보와 정보제공의 의무, 체약국단의 권고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4. GATT 제24조 제 8 항: 관세동맹 부분에서 ‘적어도 회원국들에서 기원하는 생산물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상업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의 내용이 하바나 현장에 추가되었다.

주의에 관한 다자주의의 중심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GATT 제24조의 내용은 여러 협상을 거치면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모습이 변화하였다.

(3)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T 제24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GATT 조문그룹은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를 확정하여 WTO 설립협정에 포함시켰다.³⁴⁾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1947년 GATT가 설립된 후 지역무역협정의 수와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에 협정당사국 사이의 경제적 통합이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규정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목표가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 밖에 양해규정은, 지역무역협정의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GATT 제24조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품이사회 효율성을 강화하며, GATT 제24조 제12항에 따라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양해에 나타난 회원국의 주요 합의내용은, 관세동맹과 FTA 및 이들

5. GATT 제24조 제10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이라도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바나 헌장에서 나타났다.

3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A(상품무역협정)를 구성하고 있는 GATT 1994의 일부이며, ‘GATT 1947의 조문해석에 관한 7개의 양해’ 중의 하나이다.

의 잠정협정이 GATT 제24조에 합치하기 위해서 제 5 항부터 제 8 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의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제 5 항(a)에 따른 평가는 관세 및 과징금의 경우 가중평균관세율 및 징수관세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양해는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기타 상업적 규제에 관한 일반적 수준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조치, 규정, 대상품목 및 영향을 받는 무역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4조 제 5 항(c)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하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잠정협정 당사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양해규정을 통해서 회원국이 합의하였다.³⁵⁾

2. 허용조항

허용조항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이들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일원으로서 보다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합의하여 GATT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71년에 채택된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서 인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허용조항 제 2 항은 WTO 회원국인 개발도상국 사이에 관세 또는 비

35) 이밖에도 회원국은 제24조 제 6 항과 관련하여, 제28조에 규정된 절차는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되기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는 것과, 이 협상은 상호 만족할만한 보상조정의 달성을 목적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합의하였다. 또한 양해규정은, 제24조 제 7 항(a)에 따른 모든 통보는 GATT 관련 규정 및 양해에 비추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되고 작업반은 그 결과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관세동맹과 FTA의 당사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협정의 중대한 변경 또는 진전사항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2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GATT 제22·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송유철, 『지역 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42호, 법무부, 2001, 47면].

관세 무역장벽을 인하하거나 제거하는 특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제 3 항에서는 GATT 제24조 제 4 항과 유사한 조건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간 지역무역협정의 배타성 및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다. 즉,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장벽이나 부당한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된다.³⁶⁾

3. GATS 제 5 조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탄생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상인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제 2 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 5 조를 통해 특정 국가들의 특혜적 서비스 무역 협정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무역협정으로서의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근거조항이 된다.

GATS 제 5 조는 서비스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ATT 제24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GATS 제 5 조 제 4 항은 GATT 제24조 제 4 항처럼 서비스 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GATT 제24조 제 5 항의 내용과 같이 협정 이전보다 역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벽이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GATS 제 5 조 제 1 항은 GATA 제24조 제 8 항처럼 서비스에 관한 지역 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³⁷⁾ 이외에도 기존의 차별조치들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36) 허용조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 5 장을 참고할 것.

37) 다만 GATT 제24조의 ‘substantially all the trade’라는 표현대신 GATS 제 5 조는

차별을 신설 또는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협정을 완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자유화 없이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ATS 제 5 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협정 또는 개발도상국 사이에 서비스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규정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즉, GATS 제 5 조는 GATT 제24조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허용조항의 내용을 결합해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³⁸⁾

GATS 제 5 조가 GATT 제24조와 다른 점은 관세동맹, FTA, 잠정협정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무역의 성격상 관세나 수량제한 등의 역할이 크지 않아 관세동맹의 개념을 서비스 무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으나,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근거규정의 문제점

다자주의 체제에서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EEC를 출범시킨 1957년 로마조약에 대한 GATT 작업반이 설치되면서이다. 이후 GATT의 체약국이나 WTO의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들이 근거로 하는 GATT 제24조를 비롯한 규정들의 불명확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하였고, 이 규정들의 해석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우선 지역무역협정의 창설로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이 창설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어떤 종류의 관세가 높지 않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라고 표현하고 있다.

38) 원용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13호, 법무부, 1997, 18~19면.

아야 하는지 또는 기타 무역장벽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실질적으로 모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의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문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³⁹⁾

또한 잠정협정이 ‘합리적인 기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불명확한 조항이었다. 잠정협정의 속성상 일정기간의 계획 또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잠정협정에 필요한 일정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특정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이밖에 GATT 제24조 제 7 항(a)의 ‘신속한 통보’의 정확한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물론 GATT 제24조의 해석을 위한 양해가 확정되어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정의는 각 회원국의 입장차이로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말았다.⁴⁰⁾

한편 GATS 제 5 조는 많은 점에서 GATT 제24조와 유사하므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추가적인 자유화 없이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⁴¹⁾ 허용조항은 더욱 모호하여 투명한 협정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⁴²⁾ GATT 제24조와의 관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GATT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조항이 적용되는가 또는 개발도

39) 실제로 많은 지역무역협정에서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간주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40) 특히 이것은 EU 회원국들이 제24조의 해석에 융통성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이다.

41) 원용걸, 앞의 논문, 21면.

42)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MERCOSUR는 처음에 협정의 근거를 허용조항에 두고 GATT에 통보하였으나, 역외국들의 반발로 허용조항과 GATT 제24조 모두에 근거하여 협정을 검토하기로 타협하였다.

상국에 관하여는 항상 GATT 제24조에 우선하여 허용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나타났다.⁴³⁾

과거에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GATT 또는 WTO에 통보되어야 하고, 통보를 받은 해당위원회는 각 협정별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여 각 협정이 다자주의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작업반들의 검토는 관련국들의 참여한 이해의 대립으로 무한정 지연되거나 합치여부에 대한 결론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업반의 존재이유와 GATT 또는 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검토능력 자체에 관해서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⁴⁴⁾ WTO 출범이후에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에서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WTO 규정의 해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 지역주의 근거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의

(1) GATT 제24조

GATT 제24조의 모호성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였다. WTO에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역무역협정 자체 또는 이에 의한 각국의 조치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WTO의 판정이 필요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국은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더욱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⁴⁵⁾

GATT 제24조와 다른 GATT 규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GATT 제24조가 GATT 제 1 조의 일탈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GATT 제24조가 각 지

43) 송유철, 앞의 논문, 46면.

44) 94년 말까지 구성된 69개의 작업반 중에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6개 작업반에 불과하며, 정치적인 미묘함 때문에 불일치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었다. 작업이 종료된 6개의 작업반 중에서 완전하게 GATT 규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의 FTA에 관한 1건이 유일하다.

45) 송유철, 앞의 논문, 50면~55면.

역무역협정의 당사국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GATT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수단이나 무역정책의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GATT 제24조의 예외적인 지위가 다자주의 내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제24조가 GATT의 모든 규정으로부터 이탈을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견해는, 제24조 제 5 항의 ‘Provisions of the Agreement’라는 표현이 제 1 조를 포함한 모든 GATT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지역무역협정의 모든 무역수단은 제 3 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본다.

제24조 제 5 항의 관세동맹과 FTA는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다. (a)에서는 관세동맹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상업적인 규제가 관세동맹 창설 이전에 각 회원국들에 의해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양해규정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관세의 관세율을 실행관세율로 하였다.

그러나 (b)에서는 FTA의 체결 당시 유지되고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를 종전에 존재하던 것과 비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관해서는 적용되는 관세를 양허관세율로 이해하는 견해와 관세동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행관세율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또한 (b)에 ‘전반적으로’(on the whole)라는 문구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FTA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제24조 제 8 항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이라는 용어가 가진 모호함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무역량에 대한 기준이라는 견해는 통계적인 기준치를 설정하여 회원국 사이의 무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⁶⁾

46) GATT 초기 EEC 회원국들은 총 무역량의 80% 정도가 자유화되면 실질적인 자유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지역무역협정에 단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특정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반론이 있다. 다시 말해, 양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질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중요 산업부분을 제외하여서는 곤란하고, 협정체결 이전의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무역량이 적었던 부분을 지역무역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무역장벽에는 관세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무역구제조치가 있기 때문에, 무역의 자유화가 단순히 수량적인 비율에 의한 관세의 철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제24조 제 8 항(a)는 관세동맹의 회원국이 제 3 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나 기타 상업적 규제’(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 of commerce)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동맹 회원국 사이의 대외무역규범이 조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라는 단어에 의해 모든 대외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 3 국에 대한 일부 장벽의 증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은, 지역무역협정의 창설이나 확대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정책의 조화 없이 개별국가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관세동맹의 창설로 인해 새로운 장벽이 도입된다면 이는 제 3 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회원국의 공동정책을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관세동맹의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이 있다.⁴⁷⁾

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HS 6단위 기준으로 95% 이상이 자유화되면 ‘실질적인 자유화’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7) 이밖에 제24조 제 4 항은 제 5 항 또는 제 8 항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도입하기 위한 규정인지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기술하는 것인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제 4 항과 제 5 항의 ‘장벽수준의 유지’(not to raise barriers)에 관하여 제 3 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장벽을 증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와 전반적 수준의 유지에 새로운 장벽의 증대는 허용되지

(2) GATS 제 5 조

GATS 제 5 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타났다. 우선 GATS 제 5 조 제 2 항의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통합절차’(a wider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GATT 제24조와 GATS 제 5 조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서, ‘a wider process’에는 GATT 제24조의 관세동맹이나 FTA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의 전제가 GATT 제24조와 GATS 제 5 조의 일치를 당연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GATS 제 5 조 제 1 항(a)의 ‘실질적인 분야’(substantial sectoral coverage)라는 용어에 대하여, 일부 부문은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광범위해야 하며 무역량에 관하여는 향후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금융·통신·운송 등의 기간산업을 이루는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고,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내경제활동의 자료를 원용하여 모든 종류의 공급형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GATS 제 5 조 제 5 항은 회원국이 자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들과 일치하지 못하게 구체적인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90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는 반면에, 제 7 항은 협정의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협정의 당사자가 신속하게 서비스 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통보(prompt notification)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또한 5항의 ‘기타 상업적 규제’(other regulations of commerce)에 세관절차, 등급판정, 마케팅 요구조건 등 일부만을 포함한다는 견해와 수출입의 모든 공식절차를 포함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며, 제 8 항의 ‘기타 제한적 상업규제’(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조치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에서도 견해가 대립한다.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해서 긍정하는 입장과 각 조항을 별개로 보고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제 3 절 WTO의 FTA 규제 노력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기능

GATT 체제에서는 통보된 무역협정에 관한 검토가 임시적인 작업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정의 검토에 관련된 기술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다자주의 규범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작업반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WTO 내에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WTO 일반위원회(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는 1996년에 WTO내 상설기구로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RTA)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에 지역주의의 확산에 기존의 GATT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WTO 회원국들의 반성에 따른 것이다.⁴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부여한 위임사항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공식위원회회의와 비공식회의를 개최한다.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무역위원회와 서비스무역위원회 및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채

48) 원용걸, 앞의 논문, 22면.

택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각 지역무역협정이 운영되는 것을 격년마다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연구하여 관련기구에 권고한다. 셋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협정의 검토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개발한다. 넷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주의가 갖는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외에도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활동을 종합하여 매년 WTO 일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존의 작업반이 하던 검토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기구에 보고하는 등 일반위원회가 부과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

(2)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와 견해의 대립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GATT 체제의 해당위원회 또는 임시작업반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였으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주의와 관련된 다자주의 규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지역무역협정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⁹⁾

첫째, GATT 제24조 제 7 항(a)와 GATS 제 5 조 제 7 항(a)에 의해 WTO 회원국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WTO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허용조항 제4조(a)에 의해 개발도상국인 WTO 회원국이 지역무역

49) 송유철, 앞의 논문, 48면~50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의 시기⁵⁰⁾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⁵¹⁾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WTO 회원국들은 WTO에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GATT 제24조에 의한 지역무역협정의 검토와 관련하여 회원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⁵²⁾

셋째,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관하여, 그 결론과 근거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다.⁵³⁾ WTO 회원국들에 의해 지역무역협정이 검토되는 것은 지역무역협정 자체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지역무역협정과 다자주의 규정의 일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론의 근거를 도출하거나 이를 통한 적절한 권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검토는 규정의 미비와 이에 따른 이해당사국 사이의 견해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GATS 제 5 조 제 7 항(b)에 따르면 시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계획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무역협정에 주기

50) GATT 제24조 제 7 항(a)에 관하여, 통보의 시기를 WTO 규정에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51) 통보시기에 관한 유연성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TO에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서 WTO 자체에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통보(역통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2) 즉 양해규정에 따라 가중평균관세율과 관세수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한의 통계자료와 이로 인한 무역구조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자료에 의해 그 경제적 효과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다.

53) 검토가 끝난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특정한 권고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를 다자주의 체제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와, 결론적인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정의 정비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다자주의 규범에 대한 합치성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협정당사국이 입증해야 하는지 다른 WTO 회원국에 입증책임이 있는지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적 보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WTO 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규율하려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각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었다.⁵⁴⁾

그러나 협정 검토의 근거가 되는 관련 WTO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더욱이 회원국들이 강화된 분쟁해결기능을 의식하면서 검토된 협정의 결론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협정적체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실망과 회의론이 WTO 내·외에서 제기되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에서는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 및 절차의 개정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⁵⁵⁾

2.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분쟁사례

(1)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분쟁의 주요 내용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다. WTO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1994년까지 지역무역협정에 관하여 GATT 패널이 설치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

54) 우리나라도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즉, 지역무역협정의 WTO에 대한 통보 및 정보제공은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행해지고 역통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GATT 제24조에 나타나는 관세는 실행관세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요산업부분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55)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 70호, 법무부, 2006, 8, 34면.

였는데, 모두 EC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패널보고서도 EC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1995년 이후 WTO에서 지역무역협정 문제로 패널이 판정을 내린 경우도 몇 차례에 불과하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지역무역협정의 양적인 증가, 그리고 GATT 제24조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규정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많지 않은 이유는,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GATT 제22조와 제23조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기 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지 불분명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정에 합치하는지 판정을 받을만한 동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⁶⁾ 이러한 이유로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분쟁에서는 제소국이 지역무역협정 자체와 다자주의 규정의 합치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피제소국의 특정 조치가 GATT 또는 WTO의 협정에 위배되며 GATT의 지역주의 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WTO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판정은 대부분 GATT 제24조에 관한 것이었다. GATT 제24조가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경우는 인도와 터키의 섬유와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사건과 한국과 미국의 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EC와 캐나다의 Auto Pact 사건, 일본과 EC가 제소한 아르헨티나의 수입 신발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 EC와 미국의 Wheat Gluten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무역협정이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으며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해석 또는 운영에 대한 단편적인 판정만 이루어졌다.

56)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다자주의 규정의 모호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 당사국들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요구할 실익이 큰 경우가 많지 않았다[최경림, 『지역협정에 관한 WTO 패널 판정』, □□통상법률□□36호, 법무부, 2000, 205면].

(2) 터키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사건

1963년 EC와 터키는 관세동맹을 체결하기로 하고, 양자의 무역관행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EC가 대외적으로 적용하는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터키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터키는 1996년부터 19개 인도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을 포함하여 25개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61개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GATT 제24조에 따라 WTO에 통보하였다.

인도는 터키의 조치가 수량제한의 금지 및 비차별적 적용을 규정한 GATT 제11조 및 제13조와 새로운 수입제한조치의 도입을 금지한 WTO 섬유·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ATC) 제 2 조 제 4 항에 위배되며, 이 조치는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8년 WTO의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터키는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GATT 제24조 제 4 항부터 제 9 항까지는 다른 조항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GATT 제24조 제 5 항은 관세동맹 형성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모든 GATT 의무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터키와 EC 사이의 관세동맹이 GATT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을 위한 터키의 수량제한조치는 WTO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도는 GATT 제24조는 관세동맹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GATT 의무로부터 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GATT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GATT의 다른 모든 조항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면 WTO 협정은 시장접근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는 물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⁵⁷⁾

57) 최경림, 위의 논문, 207면.

WTO 패널은 GATT 제24조의 검토결과, 이 조항이 최혜국대우 의무를 제외한 WTO 의무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GATT 제11조와 제13조, 그리고 WTO 섬유무역협정 제 2 조 제 4 항의 위반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판정의 근거를 GATT 제24조 제 5(a)항과 제 8 항, 지역무역협정과 WTO 규정과의 관계,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관행 등에서 찾았다.⁵⁸⁾

터키는 패널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며, 상소기구는 1999년 10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과 마찬가지로 터키의 수량제한조치가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패널의 GATT 제24조 제 5 항의 해석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GATT 제24조 제 5 항이 다른 GATT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조치가 GATT 제24조 제 5(a)항과 제 8(a)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관세동맹의 형성시에 도입된 것이라야 하고, 이 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면 관세동

58) WTO 패널은 GATT 제24조 제 5(a)항에 관해서, 이 조항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량제한조치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관세동맹 당사국에 대해 GATT 제11조와 제13조 및 WTO 섬유무역협정 제2조 4항의 의무로부터 일탈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다만 관세동맹의 형성 전에 비해 더 높은 무역장벽을 갖는 것을 금지할 뿐이라고 하였다.

GATT 제24조 제 8(a)항에 대하여는, 이 조항이 관세동맹의 형성시 당사국들이 제 3국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WTO에 위배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세동맹 형성을 이유로 GATT 제11조와 제13조, WTO 섬유무역협정 제 2 조 제 4 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GATT 제24조와 WTO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GATT 제24조를 다른 WTO 규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고 상소기구가 수차에 걸쳐 WTO 협정의 규정들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한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지역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또는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GATT 제24조가 WTO 협정의 의무로부터 예외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밖에 터키는 WTO의 관행이 관세동맹의 형성시 다른 GATT 조항에 위배되는 조치의 도입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1957년 로마조약에 관한 GATT 작업반의 논의, 1982년 그리스의 EC가입을 심의한 GATT 작업반의 논의, 그리고 1988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 가입을 심의한 GATT 작업반에서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맹의 형성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소기구(상소부)는 터키와 EC 사이의 관세동맹이 GATT 제24조에 합치하지만 터키가 EC와 동일한 수량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관세동맹을 성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량제한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3)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에서, FTA에 근거한 차별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멕시코 등으로부터 탄소강관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2000년 3월부터 수입되는 탄소강관에 대하여 기본관세 2%에 추가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였다.

그러나 NAFTA 협정에 의하여 탄소강관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면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함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것 등 12개 항목을 들어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6월에 WTO에 제소하였고, WTO는 2001년 10월 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⁵⁹⁾

패널은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고 차별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4조 제 8 항이 규정하는 ‘당사국 사이의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의 철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NAFTA의 형성이 GATT 제24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미국이 제시한 만큼 이를 반박할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하였다.

59) Lori Yi, Safeguard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 2001. pp. 214~220.

또한 패널은 한국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아직 NAFTA의 GATT 제24조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NAFTA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의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패널은 미국의 차별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더 나아가 패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FTA의 당사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긍정적인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이야말로 FTA의 본질(the very essence of a 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사대상과 조치대상의 범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병행관계(parallelism)가 성립하고, NAFTA 당사국에 GATT 제24조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NAFTA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구제조치는 허용된다.⁶⁰⁾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 병행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2002년 채택된 상소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조사의 대상범위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범위 사이에 일치여부의 입증책임이 조치를 취한 국가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사안과 관련된 미국의 보고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WTO 협정의 위반이라고 하여 패널의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 반면, GATT 제24조와 관련하여 NAFTA에 근거한 차별적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결의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정을 회피하였다.⁶¹⁾

60) Kaye Scholer · 최진혁,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 무역위원회, 2002, 37~38면.

61) 무역위원회, □□Trade Remedy Report□□ 1호, 2002. 3. 13, 6면.

(4) 지역무역협정 분쟁에 대한 기타 WTO의 판정

지역무역협정이 쟁점의 핵심사항으로 드러난 경우는 아니지만,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에서 지역무역협정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경우가 있다. 1997년 아르헨티나는 수입신발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에서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MERCOSUR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포함하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는데, 일본과 EC가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WTO 패널은 관세동맹의 당사국과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면 이 조사를 근거로 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에서 관세동맹의 당사국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판정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제 1 항 주석과⁶²⁾ GATT 제24조의 해석을 그 근거로 하였다.⁶³⁾ 이에 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판정을 확인하면서도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제 1 항 주석과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하여 패널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⁶⁴⁾

62)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제 1 항의 주석은 ‘관세동맹이 그 자체로서 또는 한 당사국을 대표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패널은 이 규정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주체를 나타낸 것이지 그 대상국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 2 조 제 1 항의 주석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규정한 2조 2항을 연관시켜 해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의 대상범위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범위 사이에는 병행관계(parallelism)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63) 패널은 GATT 제24조 제 8 항이 관세동맹 회원국간 사실상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으며 GATT 제11~15조와 제20조에 의한 조치는 예외로 하므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GATT 제19조 규정은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단기간 발동된다면 제24조 제 8 항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패널은 제24조 제 8 항이 관세동맹 회원국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제2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10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아르헨티나가 MERCOSUR 당사국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64)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제 1 항은 관세동맹 전체나 한 회원국을 대

Auto Pact 사건은, 일정 요건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자동차 제품에 관한 협정(Auto Pact)이 NAFTA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자, 1998년 일본과 EC가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패널은 Auto Pact의 특혜가 NAFTA의 당사국인 미국과 멕시코의 제품뿐만 아니라 NAFTA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도 캐나다의 수입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GATT 제24조로는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패널은 이러한 특혜가 캐나다의 수입자에 의한 제품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NAFTA의 당사국인 미국과 멕시코 제품이라도 다른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FTA 당사국에 부여되는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 사안에서 패널은 Auto Pact에 의한 특혜가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특혜라고 할 수 없고, GATT 제24조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이 캐나다의 Wheat Gluten을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에는 포함시키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에서는 제외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가 논의된 사건이 있었다. 1999년 EC는 미국이 산업피해조사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달리한 것이 WTO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산업피해판정을 내린 후에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산업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캐나다

표하여 관세동맹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사안과 같이 MERCOSUR가 아닌 아르헨티나가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발동한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GATT 제24조가 다른 GATT 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GATT 제 24조 제 8 항(a)와 제 5(a)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관세동맹이 형성되는 당시에 도입되어야 하고, 그 조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관세동맹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GATT 제24조를 근거로 들지 않았으며 패널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GATT 제24조에 따른 관세동맹이 성립되는 당시에 도입된 것인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이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위반 여부를 GATT 제24조를 통해서 검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제 2 항은 NAFTA와 같은 FTA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GATT 제24조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으로부터의 예외 또는 일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GATT 제24조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의 위반에 대한 변호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따라 패널은 GATT 제24조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FTA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패널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제 1 항과 제 4 조 제 2 항의 분석을 통하여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 사이에는 대칭관계(symmetry)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⁶⁵⁾ 미국이 산업피해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캐나다의 Wheat Gluten을 포함하고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⁶⁶⁾

65) 이러한 결론은 아르헨티나 수입신발사건과 비슷한 내용이다.

66) 최경림, 앞의 논문, 219면.

제 3 장 BRICs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

제 1 절 BRICs

1. BRICs의 출현과 의미

최근 들어 BRICs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경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BRICs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네 나라의 영문 국가명 첫 글자를 묶어서 만든 단어이다. 2003년 10월 미국의 투자자문회사인 Goldman Sachs가 작성한 보고서⁶⁷⁾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네 나라가 각 대륙을 대표하여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의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RICs 네 나라를 합친 경제규모는 2039년에 현재의 주요 선진국들인 G6(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합친 경제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중국은 2015년에 일본을 추월하고 2039년까지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린 브라질도 2040년까지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67) 이 보고서는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Goldman Sachs, 2003]이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대륙별로 가장 중요한 개도국들을 뽑아 경제성장 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에 발표된 'How Solid are the BRICs?'라는 보고서에서는 BRICs 국가들의 최근 수년간의 성장세가 기존의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라고 재확인하였다[이동휘, 『BRICs의 국제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11. 10, 2면].

< 표 2 > BRICs의 경제성장을 전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브라질	0.5	4.9	2.3	3.1	3.7	3.6	3.8	3.9
러시아	7.3	7.2	6.4	6.4	5.2	4.5	4.1	4.0
인도	8.6	7.5	8.4	7.6	7.2	6.8	6.4	6.3
중국	10.0	10.1	9.9	10.6	9.0	8.3	8.0	7.8

BRICs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들 국가들이 모두 인구와 국토면적에서 세계 7위권 내에 속해있는 대국이라는 점이다. BRICs 4개국을 합한 인구 점유율은 세계의 약 42.5%, 국토면적은 약 28.7%에 달한다. 또한 경제규모는 2004년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중국이 2위, 인도가 4위, 브라질이 9위, 러시아가 10위 등으로 BRICs 4개국이 모두 10위권 내에 포함되고, 이 수치는 세계 전체의 약 24.6%에 해당한다.

한편 BRICs 국가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량도 많다. 농산품에서도 브라질이 사탕수수, 중국이 쌀, 인도가 밀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이밖에도 인구의 평균연령이 선진국들보다 낮아 미래의 노동력 공급에서도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4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언제나 대국들로 인식되어 왔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들로서 상대적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나라들이 드디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최근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의경제의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세계경제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RICs의 부상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는 중국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에게서는 제1의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 된 점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은 BRICs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자료이다.⁶⁸⁾

< 표 3 > BRICs와 한국의 2005년 경제통계 비교

	명목 GDP (억 달러)	성장률(%)	1인당 GDP(달러)	수출액 (억 달러)
브라질	6277	2.3	4315	1183
러시아	7630	6.4	5340	7620
인도	7625	8.3	713	948
중국	22448	9.9	1702	7620
한국	7930	4.0	16421	2890

2. BRICs 경제의 성장원인

BRICs 경제가 주목받는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이 나라들이 추진해온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정책을 들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수출 확대가 역시 큰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선진국의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이 나라들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⁶⁹⁾

68) 오승구, 『러시아경제 호황과 시장전략』,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6. 11. 29, 2면.

69)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22면.

(1)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최근 이 나라들의 인상적인 성장은 공통적으로 각국의 내부에서 시장지향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어 온 점과 관련이 깊다. 중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이 추진되어 온 결과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산업과 무역이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과거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 정책(러시아, 중국)과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 정책(인도, 브라질)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해왔다. 그런데 20세기의 최후반기에 들어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 표 4 > BRICs의 개혁개방정책

	내 용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 - 공공부채 축소와 물가안정을 최우선 - 연금 및 세제개혁으로 정부지출 축소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 변동환율제 도입, 상품가격 및 임금에 대한 국가통제 철폐, 무역 자유화 - 시장경제 정착과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및 법규의 개혁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와 대외개방 - 통제완화 - 산업인가제도 철폐, 독점규제 완화, 시장진입 및 퇴출장벽 완화,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

	- 대외개방 - 수입규제 완화, 관세 인하, 외환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 국	- 국유기업 주식화, 농업집단화 해체, 임금에 시장 논리 도입 등 소유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 - 조세 및 금융제도 개혁으로 사유화와 상업활동의 자유화 촉진 - 무역의 국가독점 완화, 외국인투자·관광·차관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설치 - 2001년 WTO 가입과 국제행사 유치 등 대외개방 가속

나라마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의 국가 중심 경제체제에서 시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경제의 실패가 확인된 199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이들 국가들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최근 BRICs 각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에 의한 산업 성장과 수출 신장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의 인상적인 성장에 외국인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크게 늘어왔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2년

부터는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5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는데, 2005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724억 달러가 되었다. 인도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0년대 후반에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시 2001~2002년에는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5년에는 66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개방정책 초기부터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각 산업 부문의 빠른 성장과 수출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두 나라 경제의 이룩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⁷⁰⁾ 2005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146억 달러였고, 브라질은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⁷¹⁾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의 증가 추세가 일정하지 않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우도 최근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3) 인구증가

BRICs 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인구의 증가이다. BRICs 네 나라의 인구

70) 중국의 수출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줄곧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개방정책 초기인 1979년에 1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수출은 199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5,934억 달러를 기록하여 25년 만에 무려 44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외국인 투자가 매우 큰 기여를 해왔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도 개방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각 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최근 인도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IT 산업의 빠른 발전에 외국인투자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71) 조양현,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권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분석』, □□수은해외경제□□, 2006. 8, 14면.

변동 전망을 본다면 러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중국은 2040년 이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와 브라질은 205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경부터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 1 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선진국의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BRICs의 인구 증가 추세는 그 자체가 BRICs 경제의 부상에 커다란 동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⁷²⁾

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BRICs 국가들은 동서 냉전시대에 미국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립하던 나라들의 중심축이었거나 최소한 자립적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들이 현재는 모두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통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구체화되어 온 상황은 우선 BRICs 각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현황에서 드러난다. 4개국 모두 최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들이다. 이는 BRICs 국가들이 이미 미국 등 기존의 선진국들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계 3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 자체가 높은 경제성장으로 무역 수요를 창출하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BRICs 각국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 현황도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우선, 구소련의 몰락 후 이

72) 특히 브라질의 경우 다른 BRICs 국가들보다 낮은 연평균 3~4% 내외의 성장추세 속에서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인구증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를 승계한 러시아가 IMF와 World Bank에 가입한 점은 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이 자본주의체제의 일원으로 편입하였음을 시사한다.⁷³⁾ 러시아는 현재 WTO의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지체되고 있다.⁷⁴⁾

중국은 IMF와 World Bank에는 일찍 가입한 상태였으나, WTO의 가입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중국은 1983년 GATT의 옵서버 자격을 얻은 뒤, 1986년에 가입을 정식 신청했으나 미국 등 회원국들과의 이견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WTO 출범 후인 1999년이 되어서야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0년에는 유럽연합과 협상을 마친 후 실무 작업을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 4 차 WTO 각료회의에서 마침내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⁷⁵⁾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제에 동맹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통해 무역과 금융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역 면에서는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에 의해 회원국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관세 인하가 자동 적용되며, 금융 면에서는 차관 및 투자 유치가 한결 쉬워진다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국 역시 WTO 회원국들에게 관세를 인하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15.3%로 대폭 인하했으며, 2005년 말까지는 이를 다시 9.4%로 인하할 계획이다.

73) 구소련은 이 체제에 대항해 COMECON 체제를 주도하면서 동맹국 경제를 이끌어 왔었다.

74)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 승인을 놓고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 주요 사안은 농업 및 에너지부문에 대한 보조금 삭감, 금융, 보험, 통신시장의 개방 등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 5 장을 참고할 것.

75) 이 밖에 개방 이전인 1977년에 21개의 국제기구와 71개 비정부기구에 가입하고 23개의 조약에 서명하였던 중국이, 1994년에는 50개의 국제기구와 955개의 비정부기구에 가입하고 125개의 다자조약에 서명하였다. 1996년에 이르면 중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숫자가 미국의 8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시장의 개방을 통해 그 자체가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제 3 세계의 중주국을 자처하는 인도와 브라질은 IMF, World Bank, WTO 등에 모두 창설 멤버로 가입하였다.

4. BRICs 사이의 협력 확대

최근 BRICs 국가들간의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BRICs 라는 용어가 등장한 2003년 말 이후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BRICs간의 교류 확대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발생적 현상이다 BRICs라는 집단의 자의식 형성에 따른 인위적 유대 강화 노력이 더해진 결과인 점도 있다. 실제로 최근 BRICs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경제질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제를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외교 무대에서 빈번히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BRICs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 5 차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20개 개도국그룹 회의를 주도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개방 요구를 반박하고 선진국의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⁷⁶⁾ 또한 BRICs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화국 등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배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UN 과 WTO 등 각종국제기구가 개도국의 목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2004년 개최된 중국-브라질, 중국-인도간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공동성명에 채택하였다.

최근 BRICs 국가들 사이의 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모두 정상들간의 교환

76) 이 그룹에 참가한 나라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 대만, 터키, 베네수엘라 등이다.

방문을 실현하면서 BRICs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주도해왔는데, 중국과 BRICs 국가들 사이의 교역은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인도, 러시아, 브라질 교역은 2000년에서 2004년 동안 각각 연평균 46.9%, 27.5%, 44.3%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4년 말 현재 인도와 브라질의 2대 수출시장이고, 러시아의 3대 수출시장이며, 수입 면에서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서 각각 3위,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⁷⁷⁾

브라질이 주도하고 있는 MERCOSUR도 각각 인도,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MERCOSUR는 이미 인도와 FTA를 위한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4월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4년에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발족하였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은 석유, 알루미늄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5. BRICs와 한국경제

(1) BRICs와의 경제협력 현황

BRICs와 우리나라의 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수출과 수입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 무역 신장세를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와의 교역도 모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이후에는 대 브라질 교역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중국 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세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⁷⁸⁾

77) 주동주, 앞의 책, 62면.

78) 대중국 수출은 2005년 1~9월 기준 총수출의 21.9%, 그리고 대 BRICs 수출의

BRICs에 대한 수출 증가 추이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두 배를 오르내렸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95~2004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세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2003년 이후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제 1 위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브라질에 대한 수출도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BRICs 전체에 대한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등의 전자부품과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학기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등 주로 산업용 부품과 소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우리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

다른 세 나라에 대한 수출도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소재 및 부품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무선전화기, 컬러TV 등 고가의 소비재 수입도 동시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공업화진전에 따른 수요 확대로 최종재와 산업용 소재 및 부품의 수입 수요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는 철강제품과 IC 회로 등 산업용 부품과 직물의류 등 일부 소비재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나머지 세 나라로부터는 원유, 철광석, 알루미늄 등 일차 산품과 나프타, 면사 등 일차 가공품의 수입이

85.0%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개국이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내외로 미미하다.

중심을 이룬다.

투자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해마다 투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 미국에 이어 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이외에 BRICs 국가들에 대한 산업협력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BRICs 국가들과 모두 정상외교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상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2) 협력의 주요 특징

BRICs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도출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⁷⁹⁾

-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

우리나라와 BRICs의 경제협력 현황에서 볼 때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대 BRICs 무역은 4개국 전체에 대한 수출의 약 80%, 그리고 수입의 약 7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면에서는 이러한 중국집중도가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의 총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투자건수의 약 97%, 그리고 금액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되었다.

- 대규모 무역흑자

BRICs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은 압도적인 수출 우위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BRICs와의 무역은 중국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압도적인 부분이 BRICs와의 무역에서 발생해 왔는데, 전체 무역흑자의 약 70%

79) 주동주, 앞의 논문, 82~88면 참고.

정도를 BRICs와의 무역에서 기록하였다. 특히 적자를 기록해오던 러시아, 브라질과도 2005년을 넘어서면서 흑자를 기록하여 BRICs 네 나라에 대한 교역이 모두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BRICs 국가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외화가득을 위한 시장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일방적인 수출 특화

다음 무역상품 구조면에서 본다면, BRICs와의 무역은 우리가 공산품(최종재 및 소재, 부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선후진국간 무역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상황은 BRICs 국가들이 우리의 공산품을 수요하는 시장으로서 BRICs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공업국가로서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추구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거의 모든 제품 분야에서 강한 수출특화 구조를 지니고 있는 BRICs 국가들은 이상적인 무역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해외생산기지로서의 BRICs

BRICs에 대한 투자의 90% 내외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 80% 이상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BRICs가 무엇보다도 우리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기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RICs 내에서 본다면 국가별로 다소간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도

하면서 건당 규모가 중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인도의 경우 중국보다 현지시장 개척을 노린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 1인당 소득이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아직 중소기업체들의 투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러시아

1. 러시아의 경제와 무역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국토면적에 풍부한 천연자원, 앞선 과학기술력,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 러시아는 체제 전환의 진통으로 경제혼란을 겪으면서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루블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경쟁력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2000년부터는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구조는, 구소련 시절 산업구조의 잔재로 에너지 및 방위산업 등 중공업 위주의 2차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에 의존이 심한 것도 특징이다.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7위 수준이며, 생산 및 수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세계 1위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러시아 전체 총생산의 약 20~25%, 수출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⁸⁰⁾

러시아의 무역은 에너지 및 금속제품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수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계장비, 식품류, 석유화학제품 등이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80) 고재호, 『국별리포트 - 러시아』,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6. 10, 77면.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는 EU이며, EU와의 무역이 전체 러시아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CIS 지역은 러시아 수출의 16%, 수입의 23%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EU를 제외한 주요 무역 상대이다.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과도 무역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과 국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그리고 기타 자동차, 기계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세개혁 및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화안정과 환율상승을 억제하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다.

2. 한국과의 무역관계

한국은 구소련체제 붕괴 이후부터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한국을 중요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할린 천연가스 공급 프로젝트, 서캅차카 원유탐사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천연가스와 전력사업에서도 한-러 에너지 협력의 중요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유망한 분야는 수송 분야이다.⁸¹⁾

2000년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규모는 78억 달러에 육박하였으며, 초기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81)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관련된 국제적인 수송인프라개발 사업은 남북한 철도연결, 유럽-일본 수송망 연결, 동서양 연결 수송로, 북해직항로 개설, 유럽-아시아-북미 연결철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표 5 >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규모 변화 (단위: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출	7억8천만	9억3천만	10억	16억	23억	39억
수 입	20억	19억	22억	25억	37억	39억
무역규모	28억	28억	32억	41억	60억	78억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주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극동지역과 한국의 무역규모는 22억 달러였으며, 한국은 극동지역 수출의 19.4%, 수입의 15.6%를 차지하였다. 또한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의 대 한국 수출에서 54%, 수입의 23%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⁸²⁾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관계 발전은 극동지역의 향후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전통적 수요자라는 사실에 기인한다.⁸³⁾

82) 지역별로는 대 한국 수입 중 사할린(55.8%)과 연해주(40.6%)가 대부분이며, 대 한국 수출은 하바로프스크(32.5%)가 주도하고 있다.

83) Baradal. Anna B 외,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중일 3국과의 경제협력 비교분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고찰』, □□수은해외경제□□, 2006. 12, 24면.

제 4 장 러시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제 1 절 CIS의 설립

1. 독립국가연합(CIS)

(1) CIS의 출현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 대표들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설립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IS)에 서명하였고, 동시에 소련 붕괴 이후 CIS가 새로운 연계의 틀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21일에는 당시 소련 소속국가 대표자들이 이전의 협정을 사실상 동의하는 CIS 의정서에 서명하였다.⁸⁴⁾ 이후 1993년에는 CIS 헌장(Charter of the CIS)이 체결되었다.

최초의 CIS 회원국은 구소련 소속이었던 11개국이며,⁸⁵⁾ 1993년 12월 그루지아(Georgia)가 내전과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CIS에 가입하였다.⁸⁶⁾ 이후 CIS 체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러 경제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복잡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CIS의 성격과 평가

CIS는 각국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MERCOSUR, SAFTA 등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체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것이 사

84) 소련 정부는 이미 1991년 9월 6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발트해 3국과 그루지아는 CIS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85)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아르메니아(Armenia), 벨라루스(Belarus),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몰도바(Moldova), 러시아(Russia), 타지흐스탄(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우크라이나(Ukraine) [<http://www.cisstat.com/eng/cis.htm>]

86) <http://ecetrade.typepad.com//CIS%20basic%20information.doc>

실이다. 이것은 CIS의 출현이 구소련의 붕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점이 많았다는 것에서 이미 이해할 수 있다. CIS는 2002년부터 회원국의 선거에 감시단을 보내왔는데, CIS 감시단은 집권당 또는 러시아와 가까운 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보고내용이 유럽 위원회(Council of Europe) 감시단의 내용과 상충하여 큰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⁸⁷⁾

이와 같이 CIS는 소련의 붕괴 이후 각국의 연계를 이어가며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으나, 러시아의 주도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또한 CIS 형성 그 자체로서 특별한 협력의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회원국의 협력의지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CIS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CIS를 형성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들의 내용과 그 구체화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앞으로 CIS의 발전과 회원국의 협력방향을 가늠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CIS 체계 내에서 체결된 협정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IS는, 그 자체로서 회원국에게 특별한 조직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회원국들이 소련 붕괴이후 연계를 유지하고 회원국 사이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FTA 체결 및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즉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주도로 CIS라는 테두리 내에서 공존한다는 동반자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차례의 개별적인 협정들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도 그 틀을 다져가고 있다. 다음은 CIS 설립을 위한 협정들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체결된 주요 지역무역협정들이다.

87) http://en.wikipedia.org/wiki/CIS_election_observation_missions

< 표 6 > CIS 체제 설립을 위한 협정과 러시아 중심의 지역무역협정

CIS 설립과 관련된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S 설립협정 및 의정서 (1991. 12) - CIS 헌장 (1993. 1) 	
양자간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1992. 9) -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1992. 10) - 러시아-그루지아 FTA (1994. 2) 	
다자간 경제협정		경제연합을 위한 협정 (1993. 9)	
CIS FTA (1994. 4, 미발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 동맹 (1995. 1)		법체계 조화를 위한 협정 (1996. 1, 미발효)
	키르기스스탄 가입 (1996. 3, 4개국 관세동맹)	러시아-벨라루스 주권 공동체 협정 (1996. 4)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협정 (2003. 9)	타지흐스탄 가입 (1998. 12, 5개국 관세동맹)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협정 (1997. 4)	공동 농업시장 형성을 위한 협정 (1997. 3, 미발효)
	신 관세동맹 협정 (1992. 2)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가 협정 (1999. 12)	
		단일통화체계를 위한 러시아-벨라루스 협정 (2000. 11)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AEC) 설립 협정 (2000. 10)	러시아 루블의 단일 통화화를 위한 러시아-벨라루스 협정 (2002. 1)	

--	--	--	--

러시아를 중심으로 체결된 CIS 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우선 CIS 설립 이후 몇 개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CIS 체계 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지역협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루지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CIS 경제동맹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the CIS Economic Union)이 1993년에 체결되면서, 시장개방과 경제협력의 노력이 가속화 되는 것처럼 보였다. 본 협정은 물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지대의 설치, 관세동맹의 형성, 화폐통합, 자본과 노동에 관한 공동시장 형성 등을 목표로, 체결국들에게 경제통합 조치들을 의무화하였으며, 체결국들은 대외경제정책의 통일을 약속하였다. 동시에 일부 체결국들은 경제동맹협정을 충족하기 위해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 FTA의 최종목적이자 CIS 경제동맹 협정 이행의 본격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CIS 회원국의 다자간 FTA는, 체결된 후에도 발효되지 못하면서 CIS 전체의 경제협력 노력은 뜻을 피우지 못하였다.⁸⁸⁾

러시아는 CIS 다자간 FTA의 좌절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벨라루스-타지흐스탄 관세동맹 형성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키르기스탄, 타지흐스탄이 차례로 가입하면서 역내시장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5개국 관세동맹은 새로운 체계로 발전하다가, 2000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벨라루스와의 시장통합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1996년 러시아-벨라루스 사이의

88) CIS FTA가 체결되고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러시아 의회가 협정 체결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권공동체(Community of Sovereign Republics)를 시작으로, 화폐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몇 차례의 협정체결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또한 2003년 체결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사이의 단일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협정도 이와 유사한 정책의 결과이다.

3. CIS 설립 협정문과 의정서

CIS의 설립을 위한 최초의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IS)은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체결되었다. 본 협정문은 서문과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IS)가 같은 해 12월 21일에 체결되어 본 협정의 일부로 포함되었다.⁸⁹⁾

CIS 설립협정은 서문에서, 구 소련연방 체제의 종식, 회원국들의 동등한 지위를 기반으로 한 민주법치국가 건설과 이들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선언하였다. 또한 본 협정은 UN헌장 등 국제법을 존중하며, 회원국민의 인권과 경제발전, 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본 협정이 증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분야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보건, 환경보호, 과학, 무역 등이며, 이를 위해서 회원국 상호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한다.⁹⁰⁾ 본 협정은, 회원국이 평화를 추구하며 핵의 평화적 이용과 무력의 방어적 사용을 실시한다고도 규정하였다.⁹¹⁾ 또한 회원국들은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한다고 약속하였다.⁹²⁾

CIS는 회원국 상호간의 협력과 협정 등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질 것을 추구하며, 구소련 소속이었던 국가들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89)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CISagreement.html>

90) CIS 설립협정 제 4 조.

91) CIS 설립협정 제 6 조.

92) CIS 설립협정 제 8 조.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본 설립협정을 체결한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의정서를 통하여 많은 구소련 국가들이 CIS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본 협정이 발효된 국가와 발효일자는 다음과 같다.

< 표 7 > CIS 설립협정의 체결국과 발효일자

- 벨라루스 1991. 12. 10
- 우크라이나 1991. 12. 10
- 러시아 1991. 12. 12
- 카자흐스탄 1991. 12. 23
- 투르크메니스탄 1991. 12. 26
- 우즈베키스탄 1992. 1. 4
- 아르메니아 1992. 2. 18
- 키르기스탄 1992. 3. 6
- 타지흐스탄 1993. 6. 26
- 아제르바이잔 1993. 9. 24
- 그루지아 1993. 12. 3
- 몰도바 1994. 4. 8

CIS 설립협정은 회원국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명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추상적인 문구와 개념을 활용하여, 구소련 국가들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기본 방침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회원국들은 CIS 체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양자간 협상과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서로의 거리를 좁혀갔다.

4. CIS 현장

CIS 설립협정과 의정서를 통해 구소련 국가들이 CIS라는 새로운 연

계의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체결된 CIS 헌장(Charter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1993년 1월 22일 체결된 본 헌장은 서문과 총 4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CIS 설립협정보다 훨씬 자세하고 명확하였다. 다음은 CIS 헌장의 기본적인 구조이다.⁹³⁾

< 표 8 > CIS 헌장의 기본구조

제 1 장 목적과 원칙
제 1 조 - 제 5 조
제 2 장 회원자격
제 7 조 - 제10조
제 3 장 집단안보와 군사정치적 협력
제11조 - 제15조
제 4 장 충돌방지과 분쟁해결
제16조 - 제18조
제 5 장 경제, 사회, 법률 분야의 협력
제19조 - 제20조
제 6 장 국가정상회의와 정부대표회의의 기구
제21조 - 제26조
제27조 외무장관회의
제28조 - 제29조 조정자문위원회
제30조 국방장관회의와 연합군지휘관
제31조 국경부대장회의
제32조 경제법원
제33조 인권위원회
제34조 분야별 협력기구들
제35조 공식 언어
제 7 장 의회간 협력
제36조 - 제37조
제 8 장 재 정
제38조 - 제40조

93)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CIScharter.html>

제 9 장 최종조항
제41조 - 제45조

본 헌장은 제 1 조에서, CIS가 회원국들의 동등하고 독립적인 관계와 국제법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의 우호증진과 국제적 조화 및 신뢰, 상호이해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하면서도, CIS 그 자체로서는 국가가 아니며 초국가적인 권한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CIS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1991년 체결된 CIS 설립협정과 그 의정서를 체결하여 발효된 국가이거나, 국가정상회의(Council of Head of States)의 승인 후 1년 이내에 헌장상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국가, 또는 본 헌장상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CIS의 목적과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이어야 한다.⁹⁴⁾

CIS 회원국은 국제안보와 CIS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규제하며,⁹⁵⁾ UN헌장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⁹⁶⁾ 안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국가정상회의이며, 정부대표회의에서 CIS의 군사 및 경제 행동에 관해 협력한다.⁹⁷⁾ 회원국들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정의 체결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조치에 관련된 국내법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⁹⁸⁾

본 헌장은 CIS 내의 각종기구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정상회의를 설치하며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⁹⁹⁾ 또한 경제, 사회, 기타 공동관심분야에 관한 회원국의 집행기관

94) CIS 헌장 제 7 조.

95) CIS 헌장 제11조.

96) CIS 헌장 제12조.

97) CIS 헌장 제14조.

98) CIS 헌장 제20조.

99) CIS 헌장 제21조.

으로서 정부대표회의(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를 설치하여 매년 4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¹⁰⁰⁾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외교적 정책협력 등은 국가정상회의와 정부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무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에서 진행한다.¹⁰¹⁾

상설기구로서 협력자문위원회(Coordinating-Consultative Committee)를 설치하며, 여기서는 CIS의 개발과 연계를 위한 기본정책의 골격을 제안하고, 협정문들을 수행하며, 관련 분서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¹⁰²⁾ 회원국들의 경제관련 의무의 이행을 다하도록 경제법원(Economic Court)을 설치한다. 경제법원은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협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다.¹⁰³⁾

이밖에 본 헌장은 국방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 of defence)와 연합군 지휘관(Chief Commend of United Armed Forces),¹⁰⁴⁾ 국경부대장회의(Council of Commending Border Troops),¹⁰⁵⁾ 인권위원회(Commission for Human Rights)¹⁰⁶⁾ 기타 분야별 협력기구들¹⁰⁷⁾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의 의회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간 회의(Inter-parliamentary Assembly)를 구성하도록 하였다.¹⁰⁸⁾

이와 같이 CIS 헌장은, CIS 설립협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조직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본 헌장을 통하여 회원국들은 CIS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적 결속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헌장의 체결과 비슷한 시기 또는 이후에 체결되는 회원국 사이의 각종 협정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100) CIS 헌장 제22조.

101) CIS 헌장 제27조.

102) CIS 헌장 제28조.

103) CIS 헌장 제32조.

104) CIS 헌장 제30조.

105) CIS 헌장 제31조.

106) CIS 헌장 제33조.

107) CIS 헌장 제34조. 이와 같은 기구들은 2006년 4월 현재 총 70개에 이른다.

108) CIS 헌장 제36조 및 제37조.

5. 러시아 이외의 CIS 국가들이 체결한 FTA

러시아를 제외한 CIS 회원국들 역시 많은 양자간 FTA의 체결을 통하여 CIS 체제 내에서 경제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다음은 러시아 이외의 CIS 주요 회원국들이 체결한 양자간 FTA 들이다.

< 표 9 > 러시아 이외 주요 CIS 국가들의 양자간 FTA

아제르바이잔의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1992) - 몰도바 (1995) - 우크라이나 (1995) - 투르크메니스탄 (1996) - 우즈베키스탄 (1996) - 그루지아 (1996) - 카자흐스탄 (1997)
그루지아의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1994, 2000년 발효) - 우즈베키스탄 (1995) - 우크라이나 (1996) - 아르메니아 (1998) - 카자흐스탄 (1999) - 투르크메니스탄 (2000) - 몰도바 (2000)
키르기스스탄의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1993) - 아르메니아 (1995) - 카자흐스탄 (1995) - 몰도바 (1996) - 우크라이나 (1998) - 우즈베키스탄 (1998)

이밖에, 1996년에 타지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우즈베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벨라루스, 몰도바 그리고 러시아와 FTA를 체결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타지흐스탄을 제외한 모든 CIS 회원국들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CIS 국가들의 양자간 FTA는 대부분 2000년 이전까지 체결되었으며, 이중 13개 FTA만이 GATT 또는 WTO에 통보되었다.

6. CIS 국가들의 자유무역상황

CIS는 회원국 전체를 포괄하는 FTA 또는 자유무역을 위한 지역무역협정을 발효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양국간 혹은 일부 복수국간의 FTA 등을 통해서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의 대상 국가를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양국간 FTA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실행 여부도 애매한 경우가 다수 있다. CIS 국가들 중에서 WTO의 회원국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여, CIS 회원국들에 대한 WTO 차원의 FTA 집계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위에서 살펴본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들이 체결한 현재까지의 FTA 및 기타 FTA을 근거로 무역자유화 대상과 수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⁹⁾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AEC)의 무역은 조건 없이 자유화되었다.
- 아르메니아는 그루지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일부 예외를 가진 FTA를 체결하였다.
-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경제연합을 통하여 양국의 국경에서 세관을 제거하였다.
- 아제르바이잔은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는

109) 물론 이밖에도 실제 적용되는 양국간 FTA 등이 더 있을 수 있다.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¹¹⁰⁾

- 그루지아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예외 없이 자유무역을 허가한다. 다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하여 예외를 두었다.¹¹¹⁾
-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의 FTA를 통하여 일부 품목의 예외를 둔 자유무역을 실시한다.¹¹²⁾
- 카자흐스탄-몰도바 FTA는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를 둔다.¹¹³⁾
- 키르기스스탄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와의 예외 없는 FTA를 체결하였다.

7. CIS의 발전과 현재의 상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IS 회원국들의 양자간 FTA 체결과 러시아 주도의 소규모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CIS 전체의 경제통합과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정의 체결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어왔다. 다음은 CIS 국가들이 체결한 FTA를 제외한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들이다.¹¹⁴⁾

< 표 10 > CIS 회원국들이 참여한 주요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

명 칭	체결년도	체결국가
-----	------	------

110) 다만, 카자흐스탄과의 FTA에서는 보드카 및 기타 알콜 음료 그리고 담배에 관하여 예외를 설정하였다.

111) 예외분야는 맥주 등이다.

112) 러시아는 그루지아로부터 수입되는 설탕과 알콜 음료에 대하여 예외를 두었다.

113) 카자흐스탄이 설정한 예외는 밀가루, 쌀, 양피, 석유제품 등이다. 몰도바의 예외는 알콜류, 맥주, 비타민 등이다.

114)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Building Trade Partnerships in the CIS Region', TRADE/2005/17, 2005. 3. 8, p. 3.

CIS	1991	러시아 등 12개국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	2000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흐스탄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2002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기구 (Economic Cooperation Organisation, ECO)	1992	아프카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GUAM	1997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단일경제지역 (Single Economic Space, SES)	2003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하이 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2001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군사·정치·경제 그룹체제인 GUAM을 설립하였다.¹¹⁵⁾ 본 그룹은 유라시아 횡단 코카서스 운송로(Eurasian Trans-Caucasus Transportation Corridor, TRACECA) 건설, 분쟁의 해결, 평화유지활동, 공동운송계획, 경제통합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도로 설립되었다. 회원국 정상들은 2000년 9월 GUAM의 기구화 작업에 동의하면서,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¹¹⁶⁾

115) GUAM은 본 그룹의 주체인 국가들, 즉, 그루지아(Georgia), 우크라이나(Ukraine),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몰도바(Moldova)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116) 한달 후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흐스탄

GUAM의 출현은, CIS 체제가 러시아 주도의 친러시아(Pro-Russia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와 이에 대응하는 반러시아 및 친서구(Pro-Western)적인 GUAM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CIS 체제는 처음 의도하였던 경제통합과 협력이라는 명제를 절반의 성공으로 이룩한 셈이다.

제 2 절 러시아의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

1. CIS FTA

CIS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된 본 협정은,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축소 또는 제거와 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본 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CIS 회원국들의 협상의 결과 나타난 본 협정문을 분석하는 것은, CIS 국가들의 상황과 다른 FTA들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협정문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¹¹⁷⁾

< 표 11 > CIS FTA의 기본 구조

- | |
|------------------------------|
| 제 1 조 총 설 |
| 제 2 조 비회원국에 대한 규제 |
| 제 3 조 관세 및 기타 동일한 효과의 수량제한조치 |
| 제 4 조 기술 및 기타 특별제한요건 |
| 제 5 조 물품수입 및 수출 관련 과세와 절차 |
| 제 6 조 통관절차의 통합과 조화 |

이, 이전의 관세동맹을 발전시킨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를 설립하였다.
117)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cisfta.pdf>

- 제 7 조 품목분류체계
- 제 8 조 국내과세와 기타 재정적 징수
- 제 9 조 보조금
- 제10조 운 송
- 제11조 재수출
- 제12조 생산협력과 과학기술협력
- 제13조 예외사항
- 제14조 국내규제조치의 절차
- 제15조 수출규제분야에서의 협력
- 제16조 물품 관련 협정의 보완
- 제17조 서비스
- 제18조 대외경제관계의 법적규제에 관한 정보교환
- 제19조 분쟁해결절차
- 제20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 협정의 우선순위
- 제21조 관세동맹으로의 이행
- 제22조 개정과 보완
- 제23조 효력발생
- 제24조 가 입
- 제25조 회원자격

본 협정문은 서문에서, CIS FTA가 1993년 체결된 CIS 경제연합 설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루어진 산물이며, CIS의 최종목적인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의 단계적인 건설을 위해 협정의 체약국들이 노력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들은 상호무역에서 관세 등의 점진적 폐지와 기타 장벽의 제거를 약속하였다.¹¹⁸⁾ 다만, 체약국들은 제3국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권한을 보유한다.¹¹⁹⁾

118) CIS FTA 제 1 조.

제 4 장 러시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본 협정의 체약국들은 물품수입 및 수출 관련 과세절차에 있어서 장벽을 낮추어야 하며, 통관절차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¹²⁰⁾ 이밖에 체약국들은, 물품의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을 하지 않고,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¹²¹⁾ 그러나 체약국은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국제조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의 적용에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경우도 그러하다. 본 협정에서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¹²²⁾

< 표 12 > CIS FTA 예외조항의 내용

<p>일반적인 예외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 및 사회도덕의 보호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 동물과 식물의 보호 - 환경의 보호 - 국가적 자산으로서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의 보호 - 산업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 금, 은 기타 귀금속의 보호 -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 국내지원조치로 국제가격보다 저렴하게 유통되는 물품의 수출제한 - 외환불균형
<p>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비밀과 관련된 정보 유출 제한을 포함한 국가 안전의 도모 - 무기 또는 전투장비와 탄약의 무역, 군사적 행동제공, 무기와 전투장비 생산과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

119) CIS FTA 제 2 조.

120) CIS FTA 제 5 조 및 제 6 조.

121) CIS FTA 제 9 조 및 10조.

122) CIS FTA 제13조.

	<p>한 기술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 원료의 이동, 핵폐기물의 이동 - 국제 관계에서 군사적 상황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UN헌장에 기초한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
--	---

CIS FTA 협정문 제19조는 체약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명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이해관계 있는 체약국들이 의견을 교환하거나 다른 체약국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상호 승낙하는 방법
- b. 분쟁 대상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특별화해절차에서 해결하는 방법
- c. CIS 경제법원(Economic Court)에서 해결하는 방법
- d. 기타 국제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분쟁에 관하여 위의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다른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¹²³⁾

본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의 노력으로 관세동맹의 형태로 단계적 이행한다. 관세동맹은 체약국들이 그 체계에서 계속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본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형성된다.¹²⁴⁾

123) CIS FTA 제19조.

124) CIS FTA 제21조.

2.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사이의 FTA는 1992년 9월 30일 체결되었고, 1993년 3월 25일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양국이 독립적이고 동등한 기반 위에서 상호 무역규제를 축소하고 관련분야의 협력을 추구할 것임을 밝히면서, 양국 경제활동의 증진과 고용, 생산과 자원 활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본 협정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다.¹²⁵⁾

본 협정 제 1 조는, 양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물품이 체약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무역 관련 징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설정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는 양국이 매년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본 협정에 부속시키기로 하였다. 체약국들은 본 협정의 체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량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¹²⁶⁾

체약국들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 국에 재수출을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양국이 서면을 통하여 합의하여 명문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체약국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재수출을 허가한 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인 수출규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¹²⁷⁾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양립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업 행위들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는다.¹²⁸⁾ 또한 양국은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수단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활동에 관해서도 협력한다.¹²⁹⁾

125)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armrusfta.pdf>

126)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 3 조. 본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은 양국이 매년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본 협정에 부속시킨다.

127)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 4 조.

128)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 7 조.

본 협정은, 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체결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¹³⁰⁾

- 국가 방위에 관련된 정보
- 무기, 군수품, 군사장비의 무역
- 국가 방위의 필요에 관련된 조사 또는 생산
- 핵산업에 이용되는 물질 또는 장비의 공급
- 공공질서의 보호
- 산업 또는 지적재산의 보호
- 금, 은, 기타 귀금속
-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보호

체약국은 제 3 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국가간 수출규제 조화 위원회(Inter-State Coordination Council on Export Control)를 설치한다. 본 위원회는 수출규제 관련 정부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며, 수출품목에 관한 승인, 규제 위반에 대한 검토, 대상 품목의 제외 및 추가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다.¹³¹⁾ 또한 상호 무역확대와 경제협조를 위하여 러시아-아르메니아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¹³²⁾

3.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사이의 양자간 FTA는, 1992년 10월 8일 체결되었고, 1994년 7월 12일 발효되었다. 본 협정문은 총 23조의 본문과 본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¹³³⁾

129)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10조.

130)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11조.

131)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12조.

132)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17조.

본 협정 제 1 조는 양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물품이 체약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무역 관련 징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는 매년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본 협정에 부속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본 협정의 체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량규제를 하지 않을 것도 규정하였다. 이러한 수량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제한한다.¹³⁴⁾

- 국내시장이 안정될 때까지의 생산품에 관한 적자부분
- 외환지급상태가 안정될 때까지의 지급에 관한 적자부분
- 본 협정 제 4 조(제 3 국에 대한 재수출)가 규정하는 조치의 실행

체약국들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 국에 재수출되지 못한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대한 특별한 경우는 체약국 사이에 서면을 통하여 합의하여 명문화 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체약국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재수출을 허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³⁵⁾ 양국은 제 3 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수준에 관하여 서로 조화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조율한다. 또한 현재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예외를 서로 통보한다.¹³⁶⁾

본 협정은 체약국들이 다음과 같이 본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행위들을 제한한다.¹³⁷⁾

- 체약국 내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유린하거나, 경쟁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33)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kyrrusfta.pdf>

134)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 3 조.

135)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 4 조.

136)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 6 조.

137)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 7 조.

-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약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체약국들은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력의 이동에 관하여 협력한다. 또한 통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운송에 있어서 비용징수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물품의 보관, 선적 등에 있어서의 비용을 제3국의 통화로 요구하지 않는다.¹³⁸⁾

본 협정은, 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체약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³⁹⁾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야는,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제11조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하다.

대량살상무기나 로켓의 이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장비 등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함에 있어서 체약국 사이에 조화로운 정책을 취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정부간 수출규제 협력위원회(Intergovernmental Coordinating Council for Export Control)를 설치한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양국간의 단일한 규제목록을 승인하고 규제문제에 있어서 필요사항에 추가 또는 배제할 내용을 연구하는 것 등이다.¹⁴⁰⁾ 이밖에 본 협정의 내용은 대체로 러시아-아르메니아 FTA의 규정들과 유사하다.

4. 러시아-그루지아 FTA

러시아와 그루지아 사이의 FTA는 1994년 2월 3일에 체결되었다.¹⁴¹⁾ 본 협정문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또는 러시아

138)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10조.

139)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11조.

140)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12조.

141)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georusfta.pdf>

제 4 장 러시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키르기스스탄 FTA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협정문의 내용 역시 위의 FTA 규정들과 상당부분 비슷하다. 다음은 러시아가 체결한 이러한 양자간 FTA의 유사한 조항의 비교이다.

< 표 13 > 러시아의 주요 양자간 FTA 협정문의 유사 조항 비교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1992. 9. 30 체결)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1992. 10. 8 체결)	러시아-그루지아 FTA (1994. 2. 3 체결)
제 1 조	제 1 조	제 1 조
제 2 조	제 2 조	제 2 조
제 3 조	제 3 조	제 3 조
제 4 조	제 4 조	제 4 조
제 5 조	제 5 조	제 5 조
제 6 조	제 6 조	제 6 조
X	X	제 7 조
제 7 조	제 7 조	제 8 조
제 8 조	제 8 조	제10조
제 9 조	제 9 조	제 9 조
제10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12조	X
제13조	제14조	X
X	제13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0조
X	제22조	제21조
제21조	제23조	제22조

제 3 절 러시아의 기타 지역협력

1.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는 CIS 소속 5개국(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흐스탄)이 2000년 10월 10일에 설립하였다. EAEC는 1999년 5개국 관세동맹이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된 형태이다. 본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는 관세동맹의 심화와 공동경제지역으로의 변화이다.

(1) EAEC 설립협정

EAEC 설립협정은 서문과 총 2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5개국 관세동맹이 설립한 EAEC의 각 기관들의 구성과 그 기능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것들이다. 본 설립협정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4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협정문의 기본 구조

제 1 조 국제적 기구의 설립
제 2 조 목적과 역할
제 3 조 기 구
제 4 조 의장직
제 5 조 국가간 회의
제 6 조 국가간 위원회
제 7 조 의회간 회의
제 8 조 공동체 법원
제 9 조 회원자격
제10조 읍저버 자격
제11조 법적능력
제12조 기구의 소재
제13조 의사결정절차
제14조 결정의 이행
제15조 재 정
제16조 특권과 면제
제17조 언 어
제18조 유효기간
제19조 개정과 보완
제20조 등 록

본 협정은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4개의 주요기관을 설치하기로 명시하였는데,¹⁴²⁾ 그 기관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간 위원회(Inter-State Council)는 EAEC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 대표자와 정부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협정이행사항에 관해 결정한다.¹⁴³⁾
- 통합위원회(Integration Council)는 국가간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고

142) EAEC 설립협정 제 3 조.

143) EAEC 설립협정 제 5 조.

-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진행하는 상설기관이다.¹⁴⁴⁾
- 의회간 회의(Inter-Parliamentary Assembly)는 회원국간 국내법의 조화를 위한 각국 의회들의 연계기관이다.¹⁴⁵⁾
 - 공동체법원(Community Court)는 EAEC의 기관들이 내린 결정과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한다.¹⁴⁶⁾

국가간위원회의 결정 수립 절차는, 회원국의 자격정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무기명의 투표를 통하여 진행한다. 통합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동시에 4개국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간 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한다. 각 회원국의 투표권 수는 재정기여도에 비례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이 20%, 러시아가 40%,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흐스탄이 10%를 각각 가진다.¹⁴⁷⁾

EAEC 기관의 결정(Decision)은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 제정을 통하여 효력을 가진다.¹⁴⁸⁾ 또한 공동체의 업무를 행하는 관련자는 회원국에서 각종 특권과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¹⁴⁹⁾

(2) EAEC의 발전

관세동맹에서 공동체 설립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추가적 문서를 채택하면서 관계를 강화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다.

- 공동관세지대, 공동관세목록, 수출입 물품의 공동목록에 관한 문서

144) EAEC 설립협정 제 6 조.

145) EAEC 설립협정 제 7 조.

146) EAEC 설립협정 제 8 조.

147) EAEC 설립협정 제13조.

148) EAEC 설립협정 제14조.

149) EAEC 설립협정 제16조.

들 (2003년 9월 채택)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국경협정(테러와 불법적 무기이동 및 마약밀매 등에 관한 국경통제협력, 2003년 5월 채택)
- 향후 3년 발전 목표를 위한 행동계획(대외무역, 농산물, 경제정책 등을 위한 표준 법규 및 통일 국내규제 개발, 2004년 5월 채택)
- 시장의 안전을 위한 협력 협정(투자자 보호와 정보화를 통한 국가간 안전시장 설립 계획, 2004년 6월 채택)
- EAEC 규범에 관한 협정(대외협정에 관련된 법제정의 협력, 2004년 6월 채택)

2. 흑해 경제협력

흑해 경제협력(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은 1992년 6월 25일 이스탄불 정상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8년 6월 5일 BSEC 헌장이 서명되고 나서야 지역경제협력기구로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1999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로서 출범하였다. 본 헌장의 최초 서명국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루지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였으며, 2004년 4월 16일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12번째 국가로 참여하였다. 다음은 BSEC 헌장의 주요 내용이다.

< 표 15 > BSEC 기구 헌장의 구조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기구의 설립
제 2 조 정 의
제 2 장 협력의 원칙과 범위
제 3 조 원칙과 목적
제 4 조 협력의 범위

- 제 3 장 참 여
 - 제 5 조 회원자격
 - 제 6 조 가 입
 - 제 7 조 탈 퇴
 - 제 8 조 옵저버의 지위
 - 제 9 조 제 3 국과의 관계
- 제 4 장 정상회담
 - 제 10 조
- 제 5 장 중심 및 보조 기관
 - 제 11 조 외무장관회의
 - 제 12 조 보조기관들
 - 제 13 조 의 장
 - 제 14 조 3자 체제
 - 제 15 조 고위관료위원회
 - 제 16 조 상설 국제사무국
- 제 6 장 정족수 및 의사결정
 - 제 17 조 정족수
 - 제 18 조 의사결정
- 제 7 장 BSEC 관련 기구들
 - 제 19 조 일반조항
 - 제 20 조 BSEC 의회회의
 - 제 21 조 BSEC 상업위원회
 - 제 22 조 흑해 무역개발 은행
 - 제 23 조 학술협력
 - 제 24 조 BSEC 관련 센터
- 제 8 장 재정 규정
 - 제 25 조 기구의 예산
 - 제 26 조 기구에 대한 기부
- 제 9 장 법률규정
 - 제 27 조 법적 지위
 - 제 28 조 특권과 면제
 - 제 29 조 분쟁의 해결
 - 제 30 조 개 정
- 제 10 장 최종규정

제31조 서명, 비준, 동의, 승인, 첨부
제32조 유 보
제33조 발 효
제34조 기 탁

BSEC 기구는 체약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자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SE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기관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최고기구로서 외무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¹⁵⁰⁾ 외무장관회의의 실무기관으로서 고위관료 위원회(Committee of Senior Officials),¹⁵¹⁾ 상설기구로서 국제사무국(Permanent International Secretariat)¹⁵²⁾ 그리고 흑해무역개발은행(Bank of Sea for Trade and Development)¹⁵³⁾ 등이다. 이밖에도 BSEC는 상업위원회, 흑해 연구를 위한 국제센터 등을 설치한다.

BSEC는 2001년에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채택하는데, 여기에는 역내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무역장벽의 제거, 법적 기반의 강화, BSEC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BSEC는 경제협력과 개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갈등, 정치적 성향의 차이, 시장 규모와 발전 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채택된 조치들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150) BSEC 기구 헌장 제11조.

151) BSEC 기구 헌장 제15조.

152) BSEC 기구 헌장 제16조.

153) BSEC 기구 헌장 제22조.

1993년 CIS 국가들이 경제연합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에는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협정도 서명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의 FTA가 체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통합은 가속화되었다. 양국은 그해 5월 국경 세관을 없앴으며, 1996년에는 주권공동체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7년 4월 3일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합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Union)이 체결되었으며, 곧바로 연합헌장(Charter for the Union)이 채택되었다. 수차례의 변화와 연기 이후에 1999년 12월 8일 보다 긴밀한 연합 국가 건설을 위한 협정(Treaty on the Formation of a Union State)이 최종 체결되었다.

본 협정의 목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의 경제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통화체계의 단일화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본 협정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고등 및 최고 국가 위원회(Higher/Supreme States' Council, 양국 대통령, 총리, 의회 의장 등의 회의체)
- 장관급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 연합의회(Union Parliament)
-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of Justice)
- 회계원(Accounting Chamber, 연합의 예산 집행)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주권과 국가체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최고국가위원회가 통치하는 연합국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연합의 협력분야가 전보다 러시아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 창설로 안보 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2000년 2월 11일에는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개의 벨라루스 군수회사와 17개의 러시아 군수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끝자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양국은 외교정책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4. 상하이 경제협력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는 2001년 6월 15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형성되었다. 상하이 협력기구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사이의 우호증진과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운송,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밖에 회원국은 지역평화와 안보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상하이 협력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국가최고위원회(Council of Heads of Member States)이며, 정부대표자회의(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는 기구의 예산 편성, 경제 문제 등에 관한 결정 들을 통하여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등이 설치되고, 상설기구로서 베이징에 사무국과 타쉬켄트에 지역테러대처기구가 있다.

5.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sation, CACO)에 2004년 5월 28일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원래 CACO는 1994년 중앙아시아 경제연합(Central Asia Economic Cooperation, CAEC)로 출범하였으나, 2002년 2월부터 현재의 CACO로 변경되었다. 현재 CACO의 회원국은, 러시아를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흐스탄이다.

CACO의 기구는 국가간 위원회(Inter-States Council), 총리위원회(Council of Prime Ministers), 외무장관회의(Council of Foreign Affairs Ministers),

협력과 개발을 위한 중앙아시아은행(Central Asian Bank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을 두고 있다. CACO의 전신인 CAEC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회원국들의 경제협력과 단일시장 설립을 위한 노력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CACO로의 변신 이후 그 협력분야를 넓히고 있다. 즉,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회원국들의 협력을 추구한다.

CAEC 시절의 협력은, 관세조화와 일부 분야에서 이중과세의 제거를 제외하고는 큰 소득이 없었다. 2002년 CACO로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15년 이내에 FTA를 체결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04년 러시아의 CACO 가입은 구심축이 옮겨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러시아가 CACO에 가입한 주된 목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2001년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 계속 강화되어온 미국의 입지를 줄이고,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¹⁵⁴⁾ 러시아가 현재 CACO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지역경제협력의 증진을 바탕으로 한 안보의 강화에 있다.

6. 단일시장지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로 이루어진 단일시장지대(Single Economic Space 또는 Common Economic Space 또는 Common Economic Area, SES)는 2003년 9월 19일 출범하였다. SES는 CIS 체계 내에서 나타난 가장 최근의 협력형태이다.

SES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루블화를 기초로 화폐단일화를 실시하고

154) 이밖에 러시아의 CACO 가입은 이슬람 극단주의자 세력에 대한 영향력 확산 방지, 아프카니스탄 마약밀매 방지 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관세동맹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카자흐스탄은 루블화가 아닌 새로운 공동의 통화¹⁵⁵⁾를 조건으로 이와 같은 목적에 찬성한다. 그러나 친유럽적인 성향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목적에 반대하면서, 자유무역지대 설치의 경우에만 참여하는 정도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협정체결 당시에도 우크라이나는 자국 헌법의 준수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SES의 목적으로 EU 가입을 규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다.¹⁵⁶⁾

SES는 현재까지 초국가적인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원국의 의견조율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 4 절 러시아 지역무역협정의 특징

1. CIS 체제와의 연관

러시아가 체결한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들의 대부분은 CIS 소속 국가들과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 직후부터 CIS를 통한 역내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CIS이다.

1994년 CIS FTA가 체결되었으나, 그 발효를 이루지 못한 것은 러시아의 자유무역에 있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러시아의 자유무역화는 CIS 소속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FTA 체결 대상 및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즉, 거미줄처럼 연결된 CIS 회원국들 사이의 FTA 속에서, 러시아의 양자간 FTA는 각국에 대한 자유무역화의 일정 및 대상에 다소간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양자간 FTA 및 무역자유화는, 다른 CIS 소속 국가들의 양자

155)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통화는 'Altyn'이었다.

156) 다만, 우크라이나 일부에서는 EU 가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SES 관세동맹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 FTA의 체결과 그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CIS 전체의 FTA가 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자유무역화는 상대국에 따라 다변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즉, 양자간 FTA의 체결로 일반적인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룩한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벨라루스 연합처럼 국경 세관이 사라지고 화폐통화를 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러시아가 체결하는 양자간 FTA 또는 기타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 상대국이 중복되는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1991년 체결된 CIS 설립협정 이후, ECO(1992), EAEC(2000), CACO(2002), SCO(2001), SES(2003) 등의 각종 지역무역협정 또는 경제협력기구의 회원국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대국 중복현상은 지역주의 및 지역무역협력체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CIS 체제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FTA를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양자간 FTA 등으로 복잡하게 자유무역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러시아 정책의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IS는 역내 국가들이 양자간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촉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결국은 FTA 체결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왔다.¹⁵⁷⁾ 또한 여전히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소속 국가들의 경제무역협력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러시아 주도의 협정체결

CIS 출범 이후부터 러시아는 자국의 주도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이것은 구소련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러시아가 CIS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157) FTA 체결의 도미노 현상과 그 효과 등에 관해서는,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109면]을 참고할 것.

때문이기도 하였다. 러시아가 체결한 양자간 FTA 및 기타 지역무역협정들을 살펴보면, 주로 러시아의 주도로 그 영향력에 따라 협정들이 진행되어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 중심의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벨라루스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경제무역협정들과 현재까지 진행된 경제연합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규모와 영향력이 비교적 작은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는 FTA라는 규범적 틀에 막혀 주변국에 머무르면서 중심국인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루블화를 기준으로 한 화폐통합은 그러한 단적인 예이다. 주변국에 머무르는 작은 국가는 독자적인 FTA 정책 등을 추진하기 어렵고, 중심국의 경제정책과 규범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러시아는 연합을 통해 벨라루스의 경제적 외교권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다.

러시아 주도의 협정체결 현상은 CIS 내에서 반러시아 정서를 낳기도 하였다. 기존의 러시아 주도의 경제협력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CIS 회원국들이 이러한 현상에 반발하면서 1997년에 출범한 GUUAM 이 대표적이다.

3. 경제외적인 정치적 요소의 작용

CIS를 비롯한 러시아의 경제무역협력과 그에 따른 협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보분야의 협력 등 경제 이외의 정치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알 수 있다. CIS FTA 제13조의 예외조항, 러시아-키르기스스탄 FTA 제12조, EAEC의 테러와 불법적 무기이동 및 마약밀매 등에 관한 국경통제 협력 협정, CACO의 안보강화 노력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MERCOSUR나 SAFTA 등 BRICs의 다른 국가들이 체

결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경제협력기구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러시아의 안보 강화 노력은, NAFTA 이전에 체결된 미국의 FTA 정책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 구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군수, 석유 등이 안보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4. 기타 특징

위의 사항들 이외에, 러시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서 찾을 수 있는 기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의 혼재
- 협정의 단계적인 발전(러시아-벨라루스의 연합 형성 과정에서 체결된 일련의 협정들)
- 체결 후 발효되지 못하거나 발효가 늦어진 FTA 등의 존재(CIS FTA 등)
- 다양한 유형 및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단순한 경제협력, 자유무역지대 설치, 공동대외정책실현, 경제와 안보의 혼합,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정, 구체적인 결과 없는 우호증진 등 추상적 협력을 위한 협정들)

제 5 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제 1 절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의 특별취급

1. WTO와 개발도상국

150여 WTO 회원국들 중에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은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들은 WTO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스스로도 무역을 생존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WTO는 공식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회원국들 스스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WTO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¹⁵⁸⁾

- a. 장기간의 이행기간,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들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 b. WTO 조직 내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c.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1)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WTO 협정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특혜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약속하는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¹⁵⁸⁾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

GATT는 무역과 개발에 관한 제4장에서, 선진국들에 양허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양허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협상에 있어서 호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비스에 관한 협정인 GATS 역시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취급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WTO 협정들이 개발도상국에 관련하여 포함하는 규정들의 내용은, 의무이행에 있어서 장기간의 이행기간 허용, 일부 품목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유리한 시장접근 기회제공,¹⁵⁹⁾ 국내 또는 국제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요건¹⁶⁰⁾ 등이다.

(2) 무역 및 개발 위원회

WTO의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것은, 개발도상국 관련 WTO 협정의 규정 이행 감시, 기술지원에 관한 지침 제시, 개발도상국의 무역질서 참여유도 등이다. WTO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특별계획을 본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역시 본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이를 검토한다. 이밖에, 본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을 우대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관련 계획을 검토한다.

개발도상국은 다시 일반적인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과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나누어진다. WTO 무역 및 개발 위원회에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의 문제를 전담하는 하부위원회(Sub-committee)가 설치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이 다자주의 규범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159) 섬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160)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WTO 협정들에 포함된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 관련 특별 규정들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3)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WTO 사무국(WTO Secretariat)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에서 도움을 주고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WTO의 교육 및 기술협력원(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stitute)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32개의 WTO 회원국이 함께 WTO 법률자문센터를 설치하였다. 모든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은 자동적으로 이곳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일정요금을 지급하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¹⁶¹⁾

2. WTO 출범 후의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한 대우

WTO는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은 50개국이며, 이중 32개국이 WTO 회원국이다. 또한 8개국이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개국이 옵저버의 지위를 획득하였다.¹⁶²⁾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해서는 WTO가 더 높은 수준의 대우와 지원을 약속하는데, 모든 WTO 협정들에는 최빈개도국의 수출에 대해 최대한의 융통성과 최저의 무역장벽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최빈개도국에 대해 호의적인 수차례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모임에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이 합의되었다. 그 내용

161)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

162)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7_e.htm

은 다자주의 무역체계 참여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최빈개도국 상품의 시장접근 증진을 위한 선진국들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연합 무역과 개발 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은행(World Bank), WTO 등 여섯 개의 국제기구들이 최빈개도국을 위한 공동기술지원계획인 ‘통합 구상’(Intergrated Framework)을 출범하였다.

2002년에는 WTO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작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시장접근 증진, 기술지원, 최빈개도국 경제의 다양화를 위한 단체의 지원, WTO 업무참여를 위한 도움,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협상 신속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최빈개도국 수출에 대하여 관세 또는 기타 제한을 축소하고 있다.

3.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허용조항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이들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일원으로서 보다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쿄라운드에서 합의하여 GATT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다.¹⁶³⁾ 이 조항은 1971년에 채택된 일반 특혜관세제도에서 인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허용조항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의 인하와 철폐를 통한 특혜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허용한다.¹⁶⁴⁾ 허용

163) 허용조항은 1979년 11월 28일 GATT 결정(L4903)으로, 공식명칭은 ‘개발도상국의 우호적인 대우, 상호주의, 전면적 참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st-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이며 수권조항 또는 권능부여조항이라고도 한다.

164) 허용조항 제 2 항.

조항 제 3 항은 GATT 제24조 제 4 항과 유사한 조건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다. 본 항에서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첫째 이러한 협정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facilitate and promote)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장벽이나 부당한 어려움(undue difficulties)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조항은 GATT 제24조와 달리 이러한 지역무역협정들이 최혜국대우 감소조치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 항에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의 도입과 수정 또는 철폐의 경우에는 통보되어야 하며, 제 3 국이 협의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통보는 WTO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통보 내용을 검토하는데,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것과 같은 심층적인 검토절차를 자동으로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품무역 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대한 통보와 지역무역협정 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의 구체적 검토를 요하는 GATT 제24조에 근거한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절차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GATT 제24조나 GATS 제 5 조와 달리 허용조항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조항에 근거하여 체결되어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2006년 현재 전체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은 다음과 같다.¹⁶⁵⁾

165)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

제 5 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 표 16 > 허용조항을 근거로 GATT 및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협 정	발효일	통보일	성 격
인도-스리랑카	2001. 12. 15	2002. 6. 27	FTA
아세안-칠레	2003. 7. 1	2004. 12. 21	PTA
EAC	2000. 7. 7	2000. 10. 11	PTA
CEMAC	1999. 6. 24	2000. 9. 29	PTA
WAEMU/UEMOA	2000. 1. 1	2000. 2. 3	PTA
MSG	1993. 7. 22	1999. 10. 7	PTA
COMESA	1994. 12. 8	1995. 6. 29	PTA
SAPTA	1995. 12. 7	1997. 4. 25	PTA
AFTA	1992. 1. 28	1992. 10. 30	PTA
CAN	1988. 5. 25	1990. 10. 12	PTA
ECO	-	1992. 7. 22	PTA
라오스-태국	1991. 6. 20	1991. 11. 29	PTA
GCC	-	1984. 10. 11	PTA
ALADI(LAIA)	1981. 3. 18	1982. 7. 1	PTA
SPARTECA	1981. 1. 1	1981. 2. 20	PTA
방콕협정	1976. 6. 17	1976. 11. 2	PTA
중국 가입의 방콕협정	2002. 1. 1	2004. 7. 29	PTA에 가입

GSTP	1989. 4. 19	1989. 9. 25	PTA
PTN	1973. 2. 11	1971. 11. 9	PTA
TRIPARTITE	1968. 4. 1	1968. 2. 23	PTA
ECOWAS	1995. 6. 15	2005. 9. 26	관세동맹
MERCOSUR	1991. 11. 29	1992. 3. 5	관세동맹

제 2 절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허용조항의 적용요건 검토

러시아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WTO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1. WTO 회원국

어느 국가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허용조항을 적용받거나 WTO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가 WTO의 회원국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러시아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범 체계 내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정의 체결 당사국인 러시아 스스로가 WTO 회원국이어야 하는 것이다.

WTO는 2007년 1월 현재 총 15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는 현재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였다. WTO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국이 제공할 약속과 혜택 등에 관해서 협상 이후 기존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 이후 가입조건에 대한 문서를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고, 일반위원회(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였고, WTO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각국과 개별적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13년 이상을 진행한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되어, 러시아의 WTO 정회원 가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 이내에 WTO 가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WTO의 허용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모두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어야 한다. 즉,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 모두 WTO가 인정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

러시아는 경제성장 수준으로 볼 때, 아직은 WTO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WTO 허용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즉,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WTO의 다른 회원들로부터 개발도상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는 각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다. 또한 러시아가 체결하는 FTA의 상대국 역시 개발도상국이어야 할 것이다.

3. 내용상의 검토

WTO에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이 WTO 체계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즉, 해당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은 WTO 규범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WTO 회원국들의 용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사국의 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이 WTO의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회의 내용 검토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또한 그러한 협정이 WTO 질서에 배치된다면, 통보절차 이후 그 협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가 제3국의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허용조항 제 6 항에서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보다 특혜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요약

FTA는 당사국들이 상호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기타 무역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상품무역에 관한 GATT 제24조, 서비스 무역에 관한 GATS 제 5 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GATT 제24조의 해석을 위한 양해규정은, GATT 제24조의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WTO의 지역무역협정 근거규정들은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소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역할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 이후,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해야만 하였다. 1990년대 시장경제의 충격, 인플레이션과 자본의 집중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은 체제붕괴 이후 현재까지도 건재하다.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에 관련하여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자원의 수출과 국내 시장의 확대와 아울러 구소련 소속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새롭게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1992년 창설된 독립국가연합(CIS)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으며, 구소련 소속 국가들의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기본체제로 작용하고 있다. CIS는 각국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체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 이것은 CIS의 출현이 구소련의 붕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CIS 회원국들의 양자간 FTA 체결과 러시아 주도의 소규모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CIS 전체의 경제통합과,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정의 체결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어왔다. 이것은 CIS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으로 발효되지 못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주도의 CIS 체제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러시아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은 대부분 CIS 소속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FTA는 대부분 러시아 주도로 이

루어진 것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등 러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CIS의 틀을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는 WTO의 읍저버 국가로서 WTO 정회원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최근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는 등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WTO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WTO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향유할 여지가 있다. 또한 러시아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FTA의 근거규정으로 허용조항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러시아를 체결 당사국으로 포함한 수개의 복수국간 FTA가 WTO에 통보된 바가 있다.

러시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이 CIS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BRICs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과의 FTA 또는 이와 유사한 경제협력의 규범적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들의 내용과 그 발전방향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그러한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5
- 이상윤,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조석홍, □□국제통상론□□, 두남, 2001
-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 한국법제연구원, □□NAFTA와 통상분쟁의 해결□□, 1993
- 고재호, 『국별리포트 - 러시아』,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6. 10
-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 지역주의 조항의 기원: 국제경제법 형성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41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 무역구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 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한미FTA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2006. 12
- 김중렬·권원순,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세』, □□국제지역연구□□, 한국의 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참 고 문 헌

- 노현수, 「WTO 체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확산의 효과」, □□국제상학□□ 12권 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 박노형, 「NAFTA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 □□이베로 아메리카 연구□□5집,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94
- 송유철,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42호, 법무부, 2001
- 오승구, 「러시아경제 호황과 시장전략」,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원, 2006. 11. 29
- 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13호, 법무부, 1997
-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70호, 법무부, 2006, 8
- 이동휘, 「BRICs의 국제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11. 10
- 조양현,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권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 동향분석」,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6. 8
- 최경림, 「지역협정에 관한 WTO 패널 판정」, □□통상법률□□36호, 법무부, 2000
- 무역위원회, □□Trade Remedy Report□□1호, 2002. 3. 13
- Kaye Scholer · 최진혁,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7호, 무역위원회, 2002
- Baradal. Anna B 외,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중일 3국과의 경제협력 비교분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고찰」, □□수은해외경제□□, 2006. 12
- Asif H. Qureshi,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implementing international trade norm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1

- Ernst-Ulrich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London, 1997
-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r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ong 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April, 2006
- David A. Gantz,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American-Canadian Studies*, Vol. 9, 2000
- 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 Kaye Scholer LLP, “Safeguards and AD/CVD Regula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02
- Kim, Dong-Hoon / 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 Lori Yi, “Safeguard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 2001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Building Trade Partnerships in the CIS Region”, *TRADE/2005/17*, 2005. 3. 8

참 고 문 헌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ummary_e.xls
<http://www.cisstat.com/eng/cis.htm>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CISagreement.html>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CIScharter.html>
http://ecetrade.typepad.com/rtas/guam_rtg/index.html
<http://ecetrade.typepad.com//BSEC%20basic%20information.doc>
<http://ecetrade.typepad.com//Eurasian%20Economic%20Community%20Basic%20info.doc>
<http://ecetrade.typepad.com//russie%20belarus%20union%20basic%20information.doc>
<http://ecetrade.typepad.com//CIS%20basic%20information.doc>
http://ecetrade.typepad.com/rtas/bsec_rtg/index.html
http://en.wikipedia.org/wiki/CIS_election_observation_missions
<http://en.wikipedia.org/wiki/GUUAM>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armrusfta.pdf>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cisfta.pdf>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georusfta.pdf>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kyrrusfta.pdf>
<http://www.seri.org>
<http://www.klri.re.kr>
<http://www.bilaterals.org>
<http://www.sectsko.org/home.asp?LanguageID=2>
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russia/intro/index.htm#pol

부 록

[부록1]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IS

We, the Republic of Belarus, the Russian Federation (RSFSR), and Ukraine, as founding state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having signed the Union Agreement of 192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do state that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a geopolitical reality, hereby terminates its existence.

Based on the historical community of our peoples and the relations that have formed between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bilater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triving to build democratic law-based states,

intending to develop our relations on the basis of mutual recognition and respect of state sovereignty, the inher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 rejection of the use of force, economic or other methods of pressure, regulation of disputed issues through negotiations, and other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believing that further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lations of friendship, good neighborhood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our states corresponds to the fundamental national interests of their peoples and serves peace and security,

confirming our adherence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부록1]

of the United Nations, the Helsinki Final Act and other documents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undertaking to observe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norms on human and peoples' rights,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Article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hereby establish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ticle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hereby guarantee their citizens,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or other differences, equal rights and liberties.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uarantees the citizen of the other Parties, as well as stateless person residing in its territory,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or other differences, civi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and liberties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norms on human rights.

Article 3

The High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facilitate the expressio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thnic,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originality of national minorities settling their territories and established unique ethno-cultural regions, take them under the protection.

Article 4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develop equal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of its peoples and states in the sphere of politics, economics, culture, education, healthcar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cience, trade, in humanities and other fields, facilitate broad informational exchange, conscientiously and rigorously observe mutual obligations.

The parties believe it necessary conclude agreements on cooperation in the aforementioned fields.

Article 5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recognize and resp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one another and the inviolability of existing borders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They shall guarantee the openness of borders, freedom of movement for citizens and for the transfer of information.

Article 6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will cooperate in ensur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mplementing effective measures to reduce arms and military expenditures. They will strive to eliminate all nuclear weapons, general and full disarmament under strict international control.

The Parties will respect one another's aspiration to achieve the status of a non-nuclear zone and neutral state.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will preserve and support under a united command the common military and strategic space, including unified control over nuclear weapons, the proced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which shall be regulated by a special agreement.

[부록1]

They shall also guarante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lacement, functioning, material and social support for strategic military forces. The Parties shall undertake to conduct a coordinated policy for issues concerning social defense and pension support for military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Article 7

The High Contracting States hereby recognize that the sphere of their joint activity realized on an equal basis through common coordinating institutions of the Commonwealth include:

- coordination of foreign policy activity;
- cooperation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common economic space, common European and Eurasian markets, and in the sphere of customs policy;
- cooperation in developing communications and transport systems;
-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participation in creating an all-encompassing international syste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questions concerning migration policy;
- combating organized crime.

Article 8

The Parties recognize the planetary nature of the Chernobyl catastrophe and shall undertake to unite and coordinate their efforts to minimize and overcome the consequences thereof.

For these purposes they have agreed to conclude a special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at catastrophe's consequences.

Article 9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orm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esolution by way of negotiations between relevant bodies, and, where necessary, at the level of heads of Governments and the States.

Article 10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States shall retain the right to suspend the effect of this Agreement or certain of its Articles, having given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one year's notice of thi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be appended or amended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1

From the time of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the application in the territories of the signatories thereof of the norms of third states, including the forme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 1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rising for them from the treaties and agreements of the forme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rticle 13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bligations of the High Contracting States in respect of third states.

[부록1]

This Agreement is open for the accession of other member states of the forme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s well as for other states sharing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The official location of the coordinating bodi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the city of Moscow.

The activity of the bodies of the forme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in the territori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terminated.

Done at Minsk on December 8, 1991 in triplicate, with each copy in the Belorussian, Russian and Ukrainian languages, and in this respect the three texts shall have identical force.

[부록2]

PROTOCOL TO THE CIS AGREEMENT

Ratified by:

Republic of Kazakhstan - December 23, 1991;

Turkmenistan - December 26, 1991;

Republic of Uzbekistan - January 4, 1992;

Republic of Kyrgyzia - March 6, 1992;

Republic of Tadjikistan - June 26, 1993

Republic of Moldova - April 8, 1994.

The Republic of Azerbaijan, Republic of Armenia, Republic of Belarus, Republic of Kazakhstan, Republic of Kyrgyzstan, Republic of Moldova, Russian Federation (RSFSR), Republic of Tadjikistan, Turkmenistan, Republic of Uzbekistan and Ukraine on equal grounds and as High Contracting Parties hereby form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from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with account taken of reservations made upon its ratification, documents will be drafted which will regulate collabo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부록2]

This Protocol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Done at the city of Alma-Ata on December 21, 1991 in one original in the Azerbaijani, Belorussian, Kazakh, Kyrgyz, Moldavian, Russian, Tadjik, Turkmen, Uzbek and Ukrainian languages. All the texts have equal force. The original copy is stored in the archiv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which will sen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 certified copy of this Protocol.

[부록3]

CHARTER OF THE CIS

The States, having voluntarily united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hereinafter - the Commonwealth),

based on the historical commonality of its peoples and the relations that have formed between them,

acting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Helsinki Final Act and other documents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striving to secure through joint efforts the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of their peoples,

firmly resolved to realize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the protocol to that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e Alma-Ata Declaration,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order to ens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lso to support civil peace and international harmony,

desiring to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s of all the peoples of the members states,

striving to improve the mechanisms for cooperation in the Commonwealth and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부록3]

have decided to adopt this Charter of the Commonwealth an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Section I. PURPOSES AND PRINCIPLES

Article 1

The Commonwealth is based on the foundations of the equality of all of its members. The member states are independent and equal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 Commonwealth serves the further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lations of friendship, good neighborhood, international harmony, trust, mutual understanding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The Commonwealth is not a state and does not hold supranational powers.

Article 2

The purpos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The realization of cooperation in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humanitarian, cultural and other spheres;

universal and balanc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member states under the framework of common economic space, interstat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ensur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liberties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documents of the CSCE;

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to ens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realization of effective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arms and military expenditures, the elimination of nuclear and other type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and full disarmament;

assisting citizens of member states in free interaction, contacts and movement in the Commonwealth;

mutual leg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other spheres of legal relations;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states of the Commonwealth.

Article 3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mmonwealth the member states, based on generally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Final Act, shall build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interconnected and equal principles:

respect of the sovereignty of the member states, the inalienable rights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fate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the inviolability of state borders, the recognition of existing borders and

[부록3]

the rejection of unlawful territorial annexations;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and the rejection of any actions directed towards breaking up alien territory;

rejection of force or the threat of force against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a member state;

resolution of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way that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fairness are not threatened;

supremacy of international law in interstate relations;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of each other;

ensur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liberties for all, with distinction based on race, ethnicity,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convictions;

rigorous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taken pursuant to the documents of the Commonwealth, including this Charter;

account of each other's interests and the Commonwealth as a whole, rendering of assistance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in all spheres of their relations;

uniting of efforts and rendering of assisting to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peaceful conditions for the life of the peopl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ensuring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development of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roadening of integration processes;

spiritual unity of their peoples, which is based on respect for their

originality, close cooperation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valuables and cultural exchange.

Article 4

The spheres of joint activity of the member states which is realized on an equal basis through common coordinating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 member stat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shall include;

ensur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liberties;

coordination of foreign policy activity;

cooperation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common economic space, common European and Eurasian markets, and customs policy;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ystems;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environment;

questions of social and migration policy;

combating organized crime;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defense policy and the protection of external borders.

This list may be appended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members states.

Article 5

The principal legal basis for interstate relations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multilateral and bilateral in various spheres of relations of the member states.

[부록3]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must conform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ommonwealth, and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states pursuant to this Charter.

Article 6

Member states shall facilitate th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state bodies, public associations and economic structures.

Section II. MEMBERSHIP

Article 7

Founding states of the Commonwealth are the states which have signed and ratified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of December 8, 1991 and the Protocol to that Agreement of December 21, 1991 as of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harter.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are those same founding states who shall accept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Charter within the course of one year after the adoption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 state which shares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ommonwealth and accepts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Charter may also become member of the Commonwealth, by acceding to this Charter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 states.

Article 8

On the basis of a decision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 state which desires to participate in certain types of its activity, on the terms

defined in a an agreement on associated membership may accede to the Commonwealth as an associated member.

Upon a decision by the Council of Member States, representatives of other states may be present at sessions of bodies of the Commonwealth as observers.

Questions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associated members and observers in the work of bodi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regulated by the rules of procedure of such bodies.

Article 9

A memb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Commonwealth. The member state shall notify the depositary of this Charter of such intention 12 months prior to the withdrawal.

Obligations which have arisen during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this Charter shall be binding upon the relevant states until full compliance therewith.

Article 10

Violations by a member states of this Charter, systematic failure by a state to fulfil its obligations pursuant to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or decisions of the bodi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examin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Measures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may be imposed in relation to such a state.

[부록3]

Section III. COLLECTIVE SECURITY AND MILITARY-POLITICAL COOPERATION

Article 11

Member states shall conduct coordinated policy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security,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nd building of Armed Forces, and shall support security in the Commonwealth, including with the assistance of groups of military observers and collective forces for maintenance of peace.

Article 12

In the event that a threat arises to the sovereignty, security or territorial integrity of one or several member states or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member states shall without delay bring into action the mechanism for mutual consultations for the purpose of coordinating positions and for the adoption of measures in order to eliminate the threat which has arisen, including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the use, where necessary, of the Armed For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individual or collective defense according to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A decision on the collective use of armed forces shall be adopt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of the Commonwealth or interested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with account of their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13

Each member state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 stable situation at the external borders of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member states shall coordinate the activity of border guards and other competent services which exercise control and bear responsibility for observance of the established procedure for crossing external borders of the member states.

Article 14

The supreme body of the Commonwealth for questions concerning defense and the protection of external borders of the member states shall be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The coordination of military-economic activity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carried out by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The interaction of members st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he decision of other questions in the sphere of security and disarmament shall be organized by way of joint consultations.

Article 15

Specific questions concerning military-political cooperation of member states shall be regulated by special agreements.

Section IV. PREVENTION OF CONFLICTS AND
RESOLUTION OF DISPUTES

Article 16

Member states shall undertake all possibl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s, first and foremost on an international and inter-confessional basis, which may give rise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부록3]

They shall render to each other,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assistance in the regulation of such conflicts, including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17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will refrain from actions capable of causing damages to other member states and lead to the aggravation of possible disputes.

Member states will rigorously and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make efforts towards the fair peaceful resolution of their disputes by way of negotiations or reach agreement on an appropriate alternative procedure for the resolving the dispute.

If the member states do not resolve a dispute using the means indicated in part two of this article, they may transfer it to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rticle 18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shall have the authority at any stage of a dispute, the continuation of which could threaten the maintenance of peace or security in the Commonwealth, to recommend an appropriate procedure of methods for its resolution to the parties.

Section V. COOPERATION IN ECONOMIC, SOCIAL AND LEGAL SPHERES

Article 19

Member states shall cooperate in economic and social spheres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he formation of a common economic space on the basis of market relations and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capital and labor;

the coordination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of joint social programs and measures to reduce social tension in connection with the conducting of economic reform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ystems, as well as energy systems;

the coordination of credit and financial policy;

facilitation of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of member states;

encouragement and mutual protection of investments;

assistance in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goods;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istance in developing common information space;

performance of joint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rendering of mutual assistance in the liquidation of the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catastrophe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s;

implementation of joint projects and programs in the sphere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and sport.

Article 20

Member states shall implement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law, in particular, by way of conclud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부록3]

the rendering of legal assistance and facilitate the coordination of national legislations.

In the event of contradictions between norms of the national legislation of member states regulating relations in the sphere of joint activity, member states shall conduct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for the purpose of drafting proposals in order to eliminate those contradictions.

Section VI. BODIES OF THE COMMONWEALTH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Article 21

The supreme body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in which all member states are represented at the highest level, shall discuss and decides fundamental questions connected with the activity of member states in the sphere of their common interests.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shall gather at sessions two times per year.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Council may be convened at the initiative of one of the member states.

Article 22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coordinate the cooperation of bodies of executive authority of member states in economic, social and other spheres of common interests.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convene four times per year.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Council may be convened at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of one of the member states.

Article 23

Decisions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be adopted with general consent - consensus. Any state may declare its non-interest in a given question, which must not be considered to be a hindrance for the adoption of a decision.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may conduct joint sessions.

The procedure for the work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be regulated by the Rules of Procedure.

Article 24

Heads of states and heads of governments at sessions of the Council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preside sequentially in the order of the nam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using the Russian alphabet.

Sessions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be conducted, as a rule, in the city of Minsk.

Article 25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form working and auxiliary bodies both on a permanent and on a temporary basis.

[부록3]

These bodies shall be formed from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vested with the corresponding authorities.

Experts and consultants may be invited for participation in their sessions.

Article 26

For the decision of questions concerning cooperation in specific spheres or the development of recommendations for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conferences of leaders of the corresponding state bodies shall be convened.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rticle 27

The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n the basis of decisions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hall carry out the coordination of foreign policy activity of member states, including their activit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hall organize consultations on questions concerning world politics, in which they have a mutual interest.

The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shall carry out its activity in accordance with a Statute approv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Coordinating-Consultative Committee

Article 28

The Coordinating-Consultative Committee shall be a permanently functioning executive and coordinating body of the Commonwealth.

In execution of decisions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the Committee shall:

draft and submit proposals on questions concerning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developing socioeconomic ties;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agreements pursuant to specific directions of economic relations;

organize conferences of representatives and experts for the preparation of draft documents submitted to sessions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secure the conduct of sessions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nd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facilitate the work of other bodies of the Commonwealth.

Article 29

The Coordinating-Consulta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permanent authorized representatives, two from each member state of the Commonwealth, and the Coordinator of the Committee, appoint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For the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support of the work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and other bodies of the Commonwealth, there shall be under the Coordinating-Consultative Committee a Secretariat headed by the Coordinator of the Committee who is the Deputy Chairman of the Coordinating-Consultative Committee.

[부록3]

The Committee sha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approv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The loc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the city of Minsk.

Council of Ministers of Defense
Chief Command of United Armed Forces

Article 30

The Council of Ministers of Defense shall be the body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for questions concerning the military policy and military building of member states.

The chief command of the United Armed Forces shall carry out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Armed Forces, as well as by groups of military observers and collective forces for maintaining peace in the Commonwealth.

The Council of Ministers of Defense and the Chief Command of the United Armed Forces shall carry out their activity on the basis of relevant provisions approv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Council of Commanding Border Troops

Article 31

The Council of Commanders of Border Troops shall be a body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for ques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external borders of member states and support stable situation at them.

The Council of Commanders of Border Troops shall carry out their activity on the basis of a corresponding Statute approv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Economic Court

Article 32

The Economic Court shall operate for the purposes of fulfilling economic obligations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The mandate of the Economic Court include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obligations. The Court may also resolve other disputes classified as within its mandate by agreements of member states.

The Economic Court shall have the right to interpret provisions of agreements and other acts of the Commonwealth for economic issues.

The Economic Court shall carry out its activity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on the Status of the Economic Court and a Statute thereon, approv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The location of the Economic Court shall be the city of Minsk.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rticle 33

The Commission for Human Rights shall be a consultative body of the Commonwealth and shall observe the fulfillment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taken by member stat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representatives of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and operate on the basis of a Statute approv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utes.

[부록3]

The location of the Commission for Human Rights shall be the city of Minsk.

Bodies of Sectoral Cooperation

Article 34

On the basis of agreements of member states on cooperation in economic, social and other spheres, bodies of sectoral cooperation may be established, which shall carry out the development of agreed principles and rules for such cooperation and facilitate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

Bodies of sectoral cooperation (councils, committees) shall fulfill the functions envisaged in this Charter and in statutes thereon, securing the consideration and decision on a multilateral basis of questions concerning cooperation in relevant spheres.

The composition of bodies of sectoral cooperation shall include directors of the corresponding bodies of executive authority of member states.

Bodies of sectoral cooperation within the bounds of their competence shall adopt recommendations, as well as in necessary cases submit proposals for consideration by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Working Language of the Commonwealth

Article 35

The working language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the Russian language.

Section VII.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Article 36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conduct inter-parliamentary consultations, discuss questions concerning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monwealth, and develop joint proposals in the sphere of activity of national parliaments.

Article 37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consist of parliamentary delegations.

Organization of the activity of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be carried out by the Council of the Assembly, consisting of the leaders of the parliamentary delegations.

Procedural questions concerning the activity of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be regulated by its Regulations.

The location of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be the city of St. Petersburg.

Section VIII. FINANCING

Article 38

Expenditures for financing the activity of bodi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participatory share of member states and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special agreements on budgets of the bodies of the Commonwealth.

[부록3]

Budgets of bodi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approv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upon a submission from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Article 39

Questions concerning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ctivity of the bodie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Article 40

Member states shall independently bear expenditures conne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ir representatives, as well as their experts and consultants in the work of conferences and bodies of the Commonwealth.

Section IX. CONCLUDING PROVISIONS

Article 41

This Charter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found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ocedures.

Ratification instr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which will notify the other founding states of the submission for storage of each instrument.

This Charter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of the member states from the time of submission for storage of ratification instruments by all founding states or, for the founding states who have submitted their ratification instruments, one year after the adoption of this Charter.

Article 42

Amendments to this Charter may be proposed by any member state. Proposed amendments shall be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procedure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mendments to this Charter shall be adopted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They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ratification by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ocedures, from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of the last ratification certificate.

Article 43

Founding states of the Commonwealth may, upon the ratification of this Charter, make reservations and statements on sections III, IV and VII and Articles 28, 30, 31, 32 and 33.

Article 44

This Charter wi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5

This Charter is done in one copy in the state languages of the founding states of the Commonwealth. The original shall be stored at the Archiv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which shall send certified copies hereof to all the founding states.

This Charter was adopted on January 22, 1993 at a session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s at Minsk.

[부록4]

CIS FTA

The Member States of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Confirming their adherence to free development of a mutual economic cooperation,

Introducing in practice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cting towards the successive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he Creation of Economic Union, as of 24 September 1993, the city of Moscow,

Forming the conditions for a free transference of goods and services,

Providing mutual trade balance and stabilization of domestic economic condition of the participating states,

Promoting the growth of economic potential of the Member States on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relations and cooperation,

Being guided by aspiration to the regular increase of living standard of the population of their states,

Proceeding from a stage-by-stage creation of the Economic Union,

Entering into the Agreement on the Creation of a Free-trade area, furth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부록4]

Hereby agreed as follows:

Article 1

General

1.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cooperation in solving concrete tasks of the first stage of the creation of the Economic Union, directed at:

- a gradual cancellation of customs duties, taxes and levies which have equivalent effect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 elimination of other barriers to a free transfer of goods and services;
- creation and development of an effective system of mutual settlements and payments on trade and other transactions;
- coordination of trade policy with respect to the countries which are not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y to that extent to which thi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in the area of industry, agriculture, transport, finance, investment, social sphere, development of fair competition, and etc.);
- promotion of cooperation of different branches, intra-branch and scientific technical cooperation;
- harmonization and/or unification of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at extent to which this is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efficient functioning of a free-trade area.

2. Territory of the Agreement shall cover customs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3. If the meaning of terms is not specifically defined in the Agreement or by any other arrang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n in their interpret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follow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Righ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f 1969.

Disagre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r of its individual terms will be settled by the procedure accepted for the regulation of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4.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refrain from actions that contradic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prevent from achieving its objectives. This provision concerns, in particular, terms and conditions of particip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other regional economic groups, as well as other issues connected with the regulation of re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Article 2

Regime with respect to non-member stat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serve the right to a self-dependent and independent determination of a regime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with the States which are not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Article 3

Customs duties, taxes and levies which have equivalent effect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apply customs duties, taxes and levies which have equivalent effect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to impor-

[부록4]

tation and/or exportation of goods originating in customs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ntended for customs territory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Exceptions to this trade regime shall be formulated in the form of documents which are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develop and coordinat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general Schedule of exceptions to free trade regime and methods of application and of a stage-by-stage cancellation of such exceptions for a transitional period before the creation of a free-trade area.

3. Before the general Schedule of exceptions is agreed, current bilateral agreements on free trade and protocols on exceptions to this regime will be applied in rel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bilateral agreements.

4. The country of origin of a commodity shall be determined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Determining a Country of Origin of Goods which are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nex I).

Article 4

Technical and other special requirements (restrictions)

1. For purposes of eliminating technical barriers and other restrictions of similar nature in mutual trade,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seek the harmonization of technical and other special requirements and the agreement of their policy in this area.

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instruct their competent bodies to develop relevant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first paragraph hereof on a multilateral or bilateral basis.

Article 5

Goods importation and exportation related levies and formalities

1. All levies and payments (except customs duties, taxes, and levies equivalent to them) established in mutual trade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should not exceed within reasonable limits immediate actual costs.

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inform of the kinds of levies and payments and will seek an agreed reduction of their number and rates.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ek simplification and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formalities.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in particular to levies and formalities relating to: quantitative restrictions; licensing; currency control; statistical accounting; documents,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analyses and inspection; quarantine, sanitary service, fumigation, and other.

Article 6

Unification and/or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1.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take measures for a maximum simplification and unification of customs formalities, in particular, by introducing

[부록4]

single forms of customs and goods accompanying documentation, being guided by curre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instruct their competent bodies to develop proposals concerning the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nd a mutual admission of customs documents and customs sealing or fixing identification marks.

Article 7

Goods nomenclature

1. In implementing measures of tariff and non-tariff regulation, maintaining statistical accounting and exchanging statistical information, as well as for customs control and clearance,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apply Goods Nomenclatures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for their own need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f necessary, carry out further development of national goods nomenclatures.

2.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carry out the maintenance of a standard copy of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through the existing representative offices 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til other Contracting Parties declare their independent maintenance of the standard copy.

Article 8

Domestic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1.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impose taxes and fiscal levies on goods originating in customs territory of other Con-

tracting Parties in the amount exceeding their level for national goods.

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present full information on all current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Article 9

Subsidies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not to provide export and other subsidies to the enterprises located on their territories if as a result of providing such subsidies terms and conditions of fair competition are violated.

Article 10

Transit

1.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of free transit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ocess of attaching them to the system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and cooperation.

2. Transit transport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groundless delays or restrictions.

3. Conditions for transit including tariffs on transportation by any kind of transport and rendering services should not be worse than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ir own consignors and consignees and for their goods, as well as for carriers and vehicles for this Contracting Party, or provided to consignors, consignees, their goods, carriers and ve-

[부록4]

hicles of any other foreign State,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bilateral agreements.

Article 11

Re-exportation

1. No Contracting Party will permit a non-sanctioned re-exportation of goods for export of which other Contracting Parties,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se goods originate, shall apply measures of tariff and/or non-tariff regulation.

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not prevent business entities from including into contracts provisions affecting re-exportation of goods.

3. The issues concerning re-exportation of goods shall be regulated in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on Re-exportation of Goods and Procedure of Granting a Permit for Re-exportation (Annex II) which is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2

Production cooperation and scientific technical cooper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further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cooperation and scientific technical cooperation on the interstate (inter-branch, regional) level and on the level of business entities, as well as by providing different forms of state support.

Article 13

Exceptions

General Exceptions

1. This Agreement shall not hamper the right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accept measures of state regulation in the area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generally accepted in international practic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vital interests or which are undoubtedly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f which it is a signatory or is intended to become a signatory, if these measures concern:

- protection of public moral and order;
- protection of life and health of people;
- protection of animals and plants;
- protection of environment;
- protection of artistic, archeological and historical values which are national treasure/property;
-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 trade in gold, silver or other precious metals and stones;
- pre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 limitations of products export if domestic prices for them are lower than the world prices as a result of implementation of State support programmes;
- violation of balance-of-payments.

Exceptions for the reasons of safety

[부록4]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hamper the right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accept any measures of state regulation that it considers necessary, if these measures concern:

- ensuring national security, including the prevention of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relates to a State's secret;
- trade in weapons, military equipment and ammunitions and rendering military services, transfer of technologies and rendering services for the production of arms and military equipment, and for other military purposes;
- delivery of fissionable materials and sources of radio-active substances, utilisation of radio-active wastes;
- measures applied in military time or unde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actions for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on the basis of the UN's Charter to preserve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Article 14

The procedure of introducing measures of state regulation

1. The Contracting Party shall in advance notify other Contracting Parties about the reasons, nature and expected terms of introduction and validity of measures of state regulation.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duct preliminary consultations and shall work out recommendations. In the event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n agreed decision within a 6-monthly period, the Contracting Party men-

tioned in paragraph 1 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introduce measures of state regulation as it thinks best.

3. In specific cases which brook no delay, the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introduce measures of state regulation in the area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notifying at the same time and subsequently and immediately conducting consultations with other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5

Cooperation in the area of export control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and carry out agreed actions in the issues of export control.

Article 16

Coverage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goods

Free-Trade Area regime shall apply to goods originating in customs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ntended for customs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7

Services

1.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on the basis of mutuality, seek a gradual cancellation of restrictions with a view to create conditions for free rendering service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Agreement.

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determine types of services which are subject to this Article and will single out priority types of services in the

[부록4]

area of immediate service of trade turnover with respect to which the issues of liberalization of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re to be immediately solved.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serve the right to coordinate issues connected with rendering services both on a multilateral and bilateral basis.

Article 18

Exchange of information on legal regulation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agreed procedure, provide each other with information on domestic legal regulation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rticle 19

Procedure of dispute settlement

1. Any disputes and dis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or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ther disputes affect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or in connection with it, shall be settled in the following way:

- the interested Contracting Parties conduct immediate consultations between each other or by mutual cons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 within the framework of a special conciliatory procedure (by creating working parties to study materials of dispute and work out recommendations);
- in the Economic Court of the CIS;
- within the framework of other procedures provided by international law.

2. Transition to the subsequent procedure is possible by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tween which disputable questions or disagreements arose, or by the order of one of them if agreement is not reach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y of the beginning of the procedure.

Article 20

Correlation of this agreement with other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can be considered as something that prevents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from fulfilling the taken obligations in compliance with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f which this Contracting Party is a signatory or may be a signatory, provided these obligations do not contradict the provisions and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2.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advantages provided within the framework of a regional cooperation, frontier and coastal trade, preferences, free economic and customs areas regulated by domestic legislation or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부록4]

3. The Contracting Party that intends to conclude preferential trade and integration agreements with Non-Member States of this Agreement shall in advance notify other Contracting Parties about this and shall inform them of expected conditions of its participation in the mentioned agreements.

4.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the Contracting Parties who signed this Agreement and the States that joined it.

Article 21

Transition to a customs union

A free-trade area shall be considered a transitional stage to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A customs union can be created by the States which will express their desire to continue cooperation within its framework and will fulfi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2

Amendments and supplements

1. This Agreement may be supplemented and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Reservations to this Agreement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 23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is temporarily applied on the day it is signed and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f giving a depositary a third notification on the fulfillment by the signatory Contracting Parties of all necessary interstate procedures.

2. The Republic of Belarus is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3. Upon the expiration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the Agreement has come into force may take a decision regarding the participation in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the Agreement is temporarily applied.

Article 24

Joining

1.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ny Member State of the Community of Independent States for joining that recognizes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effective on the moment of joining and expresses its readiness to fulfill them in full volume.

2. The joining shall be carried out on terms and according to procedure established in a separate agreement with a joining state that is preliminarily agreed and is to be approved by all the Contracting Parties in compliance with their interstate procedures.

[부록4]

Article 25

Termin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agreement

1. Any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its participation in the Agreement by sending, six months before leaving, an official written notification to other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its intention to leave the Agreement.

2.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at causes a serious damage for the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other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a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validity of the Agreement or of its individual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is Contracting Party or to make a decision on its individual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is Contracting Party or to make a decision on its exclusion from the number of the Agreement Members.

3. For purposes of settling possible disputes and claims, as well as those of material nature,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continue to be effective with respect to the Contracting Party that terminated its participation up to the full regulation of all the requirements.

DONE in the city of Moscow on 15 April 1994, in one original copy, in the Russian language. The original copy is with the Archiv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that will send the Contracting Parties, signatories of this Agreement, its certified copy.

[부록5]

AGREEMENT ON FOUNDATION OF EAEC

The Republic of Belarus,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Motivated by the will to ensure their dynamic development by coordinating their socioeconomic reforms, combined with effective use of their economic potentials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their citizens;

Determin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furthering mutual integration processes and deepening mutu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Aware of the need to coordinate their approaches to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As an expression of their readiness to fully comply with their undertaking under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Un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Belarus dated 6 January 1995,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Union dated 20 January 1995, the Agreement on Deepening Integration in Economic and Humanitarian Spheres dated 29 March 1996, and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Union and Single Economic Space dated 26 February 1999;

As a demonstration of thei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nd also to the generally accepted prin-

[부록5]

ciples and disciplines of international law,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1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hereby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urasian Economic Community” (hereinafter, the “EAEC” or the “Community”).

The EAEC shall have such powers as are voluntarily transferred to it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remain sovereign and full-fledge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rticle 2

Objectives and Tasks

The purpose of formation of the EAEC is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effectively promote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Customs Union and the Single Economic Space, and to implement other objectives and tasks outlined in the above-mentioned agreements on the Customs Union, the Agreement on Deepening Integration in Economic and Humanitarian Spheres, and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Union and Single Economic Space, in stages as scheduled under the above documents.

Any agreements earlier mad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resolutions of the integration management bodies remain effective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tradict this Agreement.

Article 3

Authorities

To provide continuity of the integration management bodies earlier crea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he following shall be maintained to implement the objectives and tasks of this Agreement within the EAEC format:

- The Interstate Council;
- The Integration Council;
-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IPA); and
- The Community Court.

It is the Interstate Council that is authorized to terminate the functioning of the integration management bodies set up under the Agreement on Deepening Integration in Economic and Humanitarian Spheres dated 29 March 1996, and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Union and Single Economic Space of 26 February 1999.

Article 4

Chairmanship

The Chairmanship of the Interstate Council and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be held by rotation in the alphabetical order by each Member-State of the Community for one year.

The procedure for electing the Chair for other bodies of the Community shall be provided under corresponding regulations.

Article 5

Interstate Council

The Interstate Council is the chief executive body of the EAEC. Its membership comprises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leader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Interstate Council shall consider executive issues of the Community concerning the common interests of the Member-States, define the strategy, guidelines and prospects of the integration development, and make decisions aimed at implementation of the objectives and tasks of the EAEC.

The Interstate Council shall issue instructions to the Integration Committee, address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with requests and recommendations, and submit inquiries to the Community Court.

The Interstate Council may resolve to establish auxiliary bodies of the Community.

The Interstate Council shall meet on the level of heads of states no less than once a year, while the government leaders shall meet no less than twice a year. The summits shall be chair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Contracting Party chairing the Interstate Council at such time.

The functions and procedures of the Interstate Council shall be provided in the By-Laws to be approved by the Interstate Council on the level of heads of state of the EAEC Member-States.

Article 6

Integration Committee

The Integration Committee is a permanent body of the EAEC.

1. The main tasks of the Integration Committee are to:

- ensure coordinated action between the EAEC bodies;
- prepare proposals regarding the agendas of meetings of the Interstate Council and the level of participating officials, and prepare also draft resolutions and documents;
- prepare proposals regarding formation of the EAEC Budget and control its implementation;
- control the enforcement of resolutions of the Interstate Council.

In order to fulfil its tasks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 make decisions to the extent of its authority as defined hereunder or delegated to it by the Interstate Council;
- annually present to the Interstate Council a status report on the Community affairs and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its objectives and tasks, a progress report regarding its own activity, and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dget of the EAEC;
- consider measures aimed at attaining the objectives of the Community, including making appropriate agreements and maintaining a uniform policy on specific issues for the Contracting Parties, and prepare corresponding proposals;

[부록5]

- retain the right to submit recommendations to the Interstate Council, submit recommendations and requests to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and inquiries to the Community Court.

2.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include deputy heads of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hairman of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take part in the meetings of the Interstate Council.

Meetings of the Integration Council shall be held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In between the meetings of the Integration Committee, day-to-day functioning of the Community will be supported by an EAEC Commission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ppointed by the heads of state of the Member-States.

3. Organization of work and information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 Interstate Council and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gration Committee (the “Secretariat”).

The Secretariat shall be led by its General Secretary to be appointed by the Interstate Council based on the Integration Committee's recommendation for a term of three years.

The General Secretary is the chief administrator of the Community, who participates in the meetings of the Interstate Council and the Integration Committee.

The Secretariat shall be formed of citizens of the Member-States on quota basis prorated for the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mmunity Budget, and of persons employed on contract basis.

As regards their official duties, the General Secretary and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must not request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Contracting Party or any authority other than the Community. They must abstain from any actions which might affect their status as international officials responsible only to the EAEC.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spect the international nature of responsibilities of the General Secretary and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and shall not try to exercise any pressure on them while they are doing their duty.

The functions and the procedures of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be provided under the By-Laws to be approved by the Interstate Council.

Article 7

Inter-Parliamentary Assembly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is a parliamentary cooperation body within the EAEC considering issues of harmonisation (approximation, unification) of the national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bringing them into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s made in the EAEC format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tasks of the Community.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is formed of members of parliamen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delegated by such parliaments.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to the extent of its powers:

- develop fundamentals of legislation in the basic spheres of legal relations falling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Interstate Council;

[부록5]

- adopt standard drafts as basis for development of national legal acts;
- be able to extend recommendations to the Interstate Council, reques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Integration Committee and the parliamen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ubmit inquiries to the Community Court.

The By-Laws of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be approved by the Interstate Council.

Article 8

Community Court

The Community Court shall provide guarantees of uniform enforcement by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is Agreement and other agreements between the Community members and decisions taken by EAEC bodies.

The Community Court shall consider also economic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n issues of implementation of decisions of the EAEC bodies and provisions of agreements effective between the Community members, provide explanations and opinions in respect thereof.

The Community Court shall be formed of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wo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racting Party. The Judges shall be appointed by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Interstate Council, for six years.

The organization and the procedures of the Community Court shall be provided under its Statute to be approved by the Interstate Council.

Article 9

Membership

Membership of the EAEC is open to all states which will undertake the commitments arising hereunder and under other EAEC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established by resolution of the Interstate Council, and which the Members of the EAEC believe to be able and willing to comply with such commitments.

Any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EAEC provided it has complied with its obligations to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and has notified the Integration Committee officially of its withdrawal from this Agreement no later than twelve months prior to the withdrawal date. Membership shall terminate in the current budgetary year where the notice had been sent before the approval of the Community Budget for the next budgetary year. Where the notice is sent after the next year's Budget has been approved, membership shall terminate in such subsequent budgetary year.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EAEC bodies may be suspended by resolution of the Interstate Council for a Contracting Party in breach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or other Community agreements. If such Contracting Party continues to be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he Interstate Council may resolve to expel it from the Community as of such date as the Interstate Council may determine.

Article 10

Observership

The observer status at the EAEC can be granted to any state or international interstat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pplying for such status.

Decisions to grant, suspend or cancel the observer status shall be taken by the Interstate Council.

Article 11

Legal Capacity

The EAEC shall wield the legal capacity required to implement its tasks and objectives in the territor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The EAEC may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nter into agreements.

The EAEC shall wield the rights of a legal entity and shall be able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its tasks and objectives to:

- enter into agreements;
- acquire property and dispose of it;
- appear in court;
- open accounts and carry out financial transactions.

Article 12

Location of Authorities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be based in the City of Almaty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City of Moscow (the Russian Federation).

The Inter-Parliamentary Assembly shall be based in the City of Saint Petersburg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mmunity Court shall be based in the City of Minsk (the Republic of Belarus). Subject to the decision of the Interstate Council, territorial presence of the Integration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in the Member-States of the Community.

Article 13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The Interstate Council shall take all of its decisions by unanimous vote, except those regarding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Community membership, where a decision requires a unanimous vote less the vote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The Integration Committee shall take its decisions by a two-thirds' majority of votes. Where four Contracting Parties vote in favour of a decision, but there is still no two-thirds' majority, the issue will be referred to the Interstate Council. The number of votes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rrespond to their respected prorated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Budget and shall be:

The Republic of Belarus - 20 votes;

The Republic of Kazakhstan - 20 votes;

Kyrgyz Republic - 10 votes;

The Russian Federation - 40 votes;

The Republic of Tajikistan - 10 votes.

Article 14

Enforcement of Decisions

Decisions of the EAEC authorities shall be enforc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by passing the required national regulatory legal acts as provided under their national laws. Control over the enforcement of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other agreements effective for the Community purposes, and decisions of the EAEC authorities shall be effec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mmunity to the extent of their powers.

Article 15

Financing

The functioning of the EAEC authorities shall be financed out of the Community Budget.

the Integration Committee subject to consents of the member-states, and shall be approved by the Interstate Council.

The Community Budget shall never be in deficit.

The Community Budget shall be formed of pro rata contrib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s follows:

The Republic of Belarus - 20 per cent;

The Republic of Kazakhstan - 20 per cent;

Kyrgyz Republic - 10 per cent;

The Russian Federation - 40 per cent;

The Republic of Tajikistan - 10 per cent.

The budgetary funds shall be used to:

- finance the functioning of the EAEC authorities;
- finance joint projec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arried out within the EAEC framework.
- cover other purposes consistent with the terms hereof.

Where the debt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EAEC budget exceeds the amount equivalent to its annual pro rata contribution, the Interstate Council may resolve to deprive it of its voting right in the Community authorities until full repayment of the debt. Its votes shall then be distributed between the remaining Contracting Parties prorated for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Budget.

Article 16

Privileges and Immunities

The Community and its officials shall enjoy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required to effect the functions and implement the goals hereunder and under other EAEC agreements.

The extent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Community and its officials, the Secretariat staff and the territorial Representative Offices of the Integration Committee, and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Community shall be provided under separate documents.

[부록5]

Article 17

Working Language

The Working language of the EAEC shall be the Russian language.

Article 18

Validity Term and Effective Date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for an indefinite term.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hall take effect as of the date the depository, which function shall be undertaken by the Integration Committee, receives the last notice of completion of national procedures required to give effect to this Agreement.

Where necessary, the Parties shall bring their national laws into conformity with the terms hereof.

Article 19

Amendments and Supplements

Possible amendments and supplements hereto shall be made out as a separate protocol by the Contracting Parties, which protocol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20

Registration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s provided under Article 102 of the UN Charter.

Made in the City of Astana on 10 October 2000, one counterpart in each of the Belorussian, Kyrgyz, Russian and Tajik languages, all counterparts having equal legal force. In the event of any controversy regarding the content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vert to the Russian language version.

The original agreement shall be kept in the Integration Committee which shall provide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a certified copy.

[부록6]

ARMENIA-RUSSIA FTA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Armenia and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n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Armen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signed on 26 December 1991,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Foreign Trade Activities of 15 May 1992,

Keeping in mind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Co-ordination of Work on Issues Related to Export Control of Raw Materials, Equipment, Technologies and Services Which Can Be Used to Cre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for Delivery Thereof of 26 June 1992,

Striving to develop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Armen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based upon equality and mutual benefits,

Based upon the sovereign right of each Contracting Party to conduct its independent foreign economic policy and enforce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Aiming at fostering economic activities, providing full employment, increasing productivity and rational use of resources,

[부록6]

Intending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common market for goods, services, capital and labour,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apply customs duties, taxes and charges having equivalent impact on exportation and/or importation of goods originating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one of Contracting Parties and destined for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pecial cases of application of this trade regim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commodities on the basis of the agreed nomenclature shall be formalized by annual documents, which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d for its effective term, goods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ies of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deemed to be:

- (a) Completely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Contracting Parties;
- (b) Having been processed on the territory of Contracting Parties by utilizing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of third country origin, whose classification under the Harmonized System of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changed in at least one of the first four digits due to this processing;
- (c) Produced with the use of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ed in “b” above provided that their total cost does not exceed a fixed proportion of the export price of commodities sold.

Detailed rules on establishing commodity origins shall be coordinated by Contracting Parties and included in a document that shall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2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 directly or indirectly impose any internal taxes or charges on commoditie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 excess of corresponding taxes and charges imposed on similar commodities of domestic production or of third country origin;
- apply any special limitations or conditions to commoditie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 excess of limitations or conditions applie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o similar commodities of domestic production or of third country origin;
- apply rules to warehousing, reload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goods that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well as to payments and payment transfers, other than those applied in similar situations regarding goods of domestic production or of third country origin.

Article 3

1. Contracting Parties shall refrain from introducing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 and/or import of goods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부록6]

2. Quantitative restri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introduced unilaterally with strictly defined time frames only in the event of sharp deficit in the balance of payment -until the balance of payment situation stabilize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3. Quantitative restri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lso be introduc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included in the annual doc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1 of this Agreement.

4. A Contracting Party using quantitative restrictions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upon reques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reasons, forms, and possible time frames for using the abovementioned restrictions.

5.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ur to solve all issues arising in relation to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means of consultations.

Article 4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permit re-export of goods in relation to export of whic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these goods originate from applies measures of tariff-based or non-tariff-based regulation.

Re-export of such goods into third countries is permitted only upon written consent and on conditions stipulated by an authorized state agency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se good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this provision, the Contracting Party whose interests have been violated has the right for unilateral introduction of measures to regulate export of goods into the territory of the state that permitted the non-sanctioned re-export. In addition the latter shall repay the full amount of such re-export proceeds to the country of origin of relevant goods.

The term “re-export” refers to the export of goods originating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 paragraph 2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utside of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latter, for the purpose of exporting it into a third country.

Article 5

Contracting Parties will on a regular basis exchange information on customs issues, including customs statistics. Relevant authorized bod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rdinate the way to exchange such information.

Article 6

Contracting Parties will inform each other of all exceptions to the existing customs tariffs applied unilaterally.

Article 7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ider incompatible with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y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shall not allow and eliminate the following methods thereof:

[부록6]

- agreements between enterprises, decisions made by the associations of enterprises, and general methods of business practices aimed at hindering or limiting competition or disrupting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 actions by means of which one or a few enterprises use their dominant position, limiting competition within the entir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a significant part thereof.

Article 8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measures of tariff and non-tariff regulation in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s, statistical information exchange, and for carrying out customs procedures,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use the unified, nine-digit Commodity Nomenclature of Foreign Economic Activities (CN FEA), based up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Combined Tariffs and Statistics Nomenclature of the EEC. For their own needs Contracting Parties may expand this Commodity Nomenclature beyond the nine digits if necessary.

Introduction of the reference original of the Commodity Nomenclature is carried out by the Russian Federation through the existing representations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til the Republic of Armenia declares its independent introduction of such an original.

Article 9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use state aid in the form of subsidies to enterprises or in any other form if the result of such state aid would be

the distortion of normal economic condi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0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the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ransit is the major condition for achieving goals of this Agreement and a substantial element in the process of their integration into the system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and cooperation.

Thereup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unimpeded transit through its territory for goods originating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third countries and destined for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any third country, and shall supply exporters, importers, and carriers with all facilities and services available and necessary for ensuring transit on terms not worse than those granted to national exporters, importers, or carriers, or exporters, importers or carriers of any other third state.

Transit tariffs for all types of transportation, including tariffs for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s, shall be economically justified and shall not exceed normal operational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profit rates.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request payment for warehousing, reload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goods in the currency of any third stat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 special agreement on transit.

Article 11

Contracting Parties have the right to take measures which they consider necessary for protecting their vital interests or which are undoubtedly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or intend to become parties, if these measures relate to:

- information affecting the interests of national defence;
- trade in arms, munitions and military equipment;
- research or production related to the defence needs;
- supply of materials and equipment used in nuclear industry;
- protection of public morality and public order;
-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 gold, silver, and other precious metals and stones;
- protection of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rticle 12

With the goal of pursuing coordinated policy of export control in relation to the third countries on goods and services included in common check lists,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an Inter-State Coordination Council on Export Control consisting of the heads of national bodies of export control and support staff. Functions of Inter-State Coordination Council shall include the approval of common check lists of goods and services, examination of cases of export control requirements violation, as well as elaboration of proposals to introduce or to call off sanctions.

Article 13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place the provisions of agreements concluded earlier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sofar as the latter are incompatible or identical with the former. Contracting Parties will instruct their competent authorities to prepare an appropriate protocol on this matter.

Article 14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other Agreements concluded earlier by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third countries.

Article 15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Contracting Parties from establishing relationships which do not contradict the goals and terms of this Agreement with the states which are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with their associ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16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lated to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means of negotiations.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ur to avoid conflicting situations in mutual trade.

Contracting Parties establish that claims and disputes between economic entities of both countries resulting from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부록6]

commercial contracts or transactions, in case they cannot be settled amicably on the basis of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and unless agreed otherwise, will be the exclusive competence of arbitration tribunals (permanent or ad hoc)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Contracting Parties or the territory of the third states specified by the Parties having signed the contract.

The latter can also define the applicable substantive law, norms and procedures as well as the premises for the hearing of the cas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sure in its territory effective means to recognize and enforce arbitration awards.

Article 17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Agreement and to elaborate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establish a joint Armenian-Russian commission.

Article 18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hat the Republic of Armenia may establish its trade represent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its trade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Armenia. The legal status of these trade representations, their functions and residence will b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a separate agreement.

Article 19

Any state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would be agreed between the acceding state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0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shall be a Protocol on exceptions to free trade regime which the Parties shall sign in one month after the signature of the Agreement.

Article 21

This Agreement becomes effective upon exchange of notices of comple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of intra-state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will become invalid after twelve months from the date, when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of its desire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after its termination shall apply to the contracts among th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concluded, but not implemented during the period when the Agreement is in force.

Done in the City of Erevan, on September 30, 1992 in two originals, each in Armenian and Russian,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The Agreement has come into force on March 25, 1993.

[부록7]

GEORGIA-RUSSIA FTA

Striving for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Georg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advantage;

Proceeding from the sovereign rights of each Side to the agreement to carry out independent foreign economic policy, to ensure implement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alization of declared intentions;

Aiming to promot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market of commodity, service, capital and labour;

Striving for creation of appropriate conditions for formation of the customs union between both countries;

The Government of Georg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greed* on the following:

Article 1

1. Sides to the agreement do not impose customs duties, taxes and charges having equivalent effect on export and import of commodity originated from the customs area of one of the Sides and designated for delivery to the customs area of another Side. According to the agreed commodity nomenclature, peculiarities of application of trade regime are generally drawn up between both countries through annual protocols that are inherent parts of the present agreement.

2. For objectives and operating period of the present agreement fol-

[부록7]

lowing goods are considered to be originated from the areas of the Sides:

- (a) goods, fully produced on the areas of the Sides;
- (b) goods, processed on the areas of the Sides through utilization of raw materials and accessory items originated from third countries, and relatively having changed the identit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commodity nomenclature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harmonized system of description and coding of goods and on combined tariff and statistic nomenclature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proceeded from the first four marks;
- (c) goods, produced through utilization of raw materials and accessory items noted in paragraph (b), provided that their aggregate cost does not exceed the fixed share of export part of realized goods.

Detailed rules of the origin of goods will be drawn up by the Sides through the separate document, which will be the inherent part of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2

Sides will not impose local taxes or charges directly or indirectly on goods, covered by the present agreement, at the rate that exceeds the level of relevant taxes or charges imposed on analogous goods of the local production or those produced in third countries;

Sides will not introduce special restrictions or demands towards export and/or import of goods, covered by the present agreement, that in similar cases are not used towards analogous goods of the local production or

those produced in third countries;

Sides will not use different rules towards warehousing, transportation, storage, shipment of goods originated from another country to the agreement as well as towards repayments and remittances, with the exception of rules that in similar cases are used towards domestic goods or those produced in third countries.

Article 3

1. Sides will refrain from carrying out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equivalent measures on export and/or import of good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agreement.

2. Quantitative restrictions, no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ascertained unilaterally within reason and in strictly determined terms in the following cases only:

- In case of sharp commodity deficiency at the domestic market - until stabilization of situation at the market;
- In case of balance-of-payments deficit - until stabilization of balance-of-payments;
- In case, where any kind of commodity is imported to the area of one of the Sides by such an increased quantity or in conditions that cause the damage or threaten to inflict damage on domestic procedures of similar or directly competitive goods;
- In order to implement measures determined in Article 4 of the present agreement.

[부록7]

3. Quantitative restrictions no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ascertained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Sides and may be included in annual protocols, noted in Article 1 of the present agreement.

4. Side, which applies quantitative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rovides another Side with necessary information about reasons for establishment, forms and possible terms of application of mentioned restrictions.

5. Sides will strive for settlement, through consultations, of all ques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ris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4

Each Side will not permit the re-export of goods, in regard to the export of which another Side, producing these goods, applies tariff and/or non-tariff regulation measures.

Sides exchange lists of goods to which tariff or non-tariff regulation measures are used. Re-export of such to third countries may be implemented only through the letter of consent and in terms, defined by the authorized body of the producer country.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is provision, the Side, whose interests are violated, has the right to introduce unilaterally measures of regulation of exportation of commodity at the territory of the Side, which has committed unauthorized re-export. In case of unauthorized re-export, incomes from such re-export are returned to the producer country.

Sides will annually coordinate terms, nomenclature and volume of the products sanctioned for re-export.

For objectives of this Article, under re-export is considered the export of commodity originated from the customs area of one of the Sides, by another one out of its customs area with the purpose of the commodity's exportation to the third country.

Article 5

Sides will exchange, on regular basis, an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 issues, including customs statistics. Authorized bodies to the Sides will draw up the regulation of exchange of such information through an appropriate document.

Article 6

Sides will take measures for approaching the rate of customs duties applied during trade with third countries and to this end they will hold regular consultations.

Sides will inform each other about all exclusions from customs tariffs effecting in their countries.

Article 7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perating on their territories, Sides will promote the extension and deepening of equal and mutually advan-

[부록7]

tageous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of economic entities of all levels and forms of property,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s, international companies, with participation of third countries with the aim to use their potential for formation of effective economic space.

Article 8

Sides consider that unfair business practice is incompatible with the agreement's objectives. It is expressed in the following:

- in concluding agreements between enterprises, their associations that aim to prevent or restrict competition or violate its conditions at the territories of the Sides;
- in making actions, through which one or several enterprises, using their dominant condition, restrict competition on the whole territories or on the substantial part of the Side's territory.

Article 9

Sides will not use governmental assistance through subsidization or through any other form to the enterprises if such governmental assistance causes violation of normal economic condition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ide.

Article 10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regulation of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for exchange of statistics and for implementation of customs procedures Sides agreed to apply common nine-digit commodity

nomenclature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harmonized system of description and coding of goods. Herewith, for their governmental needs, in case of necessity, Sides implement the development of commodity nomenclature beyond the bounds of nine-digits.

Russian Federation implements the conduction of standard pattern of the commodity nomenclature through representatives 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til the Republic of Georgia will declare independent conduction of the standard copy.

Article 11

Sides are agreed that the maintenance of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transit is the most significant term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greement, an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ocess of their linking up in the system of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In this regard, each Side will insure free transit, through its territory, of goods originated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Side and/or of third countries and designated for the customs area of another Side or of any other third country. Each Side will provide exporters and importers with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ransit security in terms not worse than the ones with facilities and services that are given to own exporters and importers or those of any other third country.

Side will not request the remuneration for warehousing, unloading, storage and shipment services in the currency of any other third State.

Article 12

Nothing in the present agreement must prevent any Side from implementing measures that a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for protection of the Side's fundamental interests and that are unconditionally essential for fulfillmen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participant of which the Side is, if these measures concern the following:

- Information concerning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 Trade in weapon, ammunitions, military equipment;
- Investigations and production concerning defensive needs;
- Supply with materials and equipment applied in nuclear industry;
- Protection of the public moral and public order;
- Protection of industrial or intellectual property;
- Gold, silver or other precious stones and metals;
-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imals and plants.

Article 13

In order to develop trade between two countries, Sides will provide each other with assistance in participating in trade fairs and exhibitions, held in one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14

Present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operation of other agreements, concluded earlier between the Sides and third countries.

Article 15

Nothing in the present agreement prevents the Sides from establishing relations, without violating objectives and terms of the agreement, with third countries as well as with their associ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Sides will hold consultations in such cases, where the mentioned relations may affect the interests of one of the Sides.

Article 16

Disputes, concerni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greement's provisions, will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s.

Article 17

In order to implement the present agreement and to elaborat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e Sides agreed to establish the joint Russian-Georgian Commission.

Article 18

Sides agreed that the Republic of Georgia may establish its trade represent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its trade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Georgia. The legal status, functions and location of trade representations are determined through separate agreements.

[부록7]

Article 19

In the case of the Sides' approval, any country may join the present agreement in terms that will be coordinated between this country and the Sides.

Article 20

Protocol on exclusions from the free trade regime is the inherent part of the present agreement. Sides undertake to sign this protocol until 15 March 1994.

Article 21

The present agreement may be completed or changed according to preliminary negotiations between the Sides. Indicated changes and complements must be fulfilled through the written form.

Article 22

The present agreement comes into effect from the date of exchange of notifications on implementation of intergovernmental procedur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agreement's coming into force, and will be in force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when one of the Sides sends the written notification to another one with the purpose of its operation.

DONE on Tbilisi, on 3 February 1994, in two copies, each in Georgian and Russian languages. Bot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부록8]

KYRGYZ-RUSSIA FTA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yrgyz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Friendship, Collaboration and Mutual Aid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yrgyzstan, signed on 10 June 1992,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Collaboration in the Area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as of 15 May 1992,

Considering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Coordination of Work on the Issues of Export Control of Raw Materials, Materials, Equipment, Technologies and Services, which can be used to create weapons of mass extermination and rocket resources for its delivery, as of 26 June 1992,

Aspiring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yrgyzstan and the Russian Federation based on equality and mutual benefit,

Proceeding from the sovereign right of each Contracting Party to carry out an independent foreign economic policy and provide the execu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alization of proclaimed intentions,

Intending to assist in the creation of a single market of goods, services, capitals, and manpower,

Wishing to further the creation of conditions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부록8]

Hereby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apply the customs duties, taxes and levies, which have equivalent effect, with respect to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goods originating in the customs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ntended for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features of using a trade regime between both countries based on the agreed nomenclature of goods shall be in the form of a yearly Protocol which is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d for the period it is effective, the goods origina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the goods:

- (a) wholly produced o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 (b) which were subject to processing o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ith the use of raw materials, materials and parts originated from third countries, which changed (because of that) their belonging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proceeding from the first four digits;
- (c) produced with the use of raw materials, materials, and parts mentioned in paragraph (b), provided that their total cost does not exceed a fixed share of the export price for saleable goods.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coordinate the detailed rules of goods' origin in a separate document which will be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not:

- directly or indirectly impose on goods, subject to this Agreement, domestic taxes or levies which exceed the relevant taxes or levies imposed on simila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or goods originated from third countries;
- with respect to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subject to this Agreement, introduce any special restrictions or requirements which are not similarly applied to simila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or goods originated from third countries,
- with respect to warehousing, transshipping, storing and transporting goods originat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with respect to payments and transfer of payments, apply rules other than those which are similarly applied with respect to its own goods or goods originated from third countries.

Article 3

1. Under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refrain from applying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measures, equivalent with them, with respect to exportation and/or importation of goods.

2.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unilaterally established in reasonable limits and for a strictly appointed term in cases of:

[부록8]

- acute deficit of this product in the domestic market until the market situation is stabilized;
- acute deficit of balance of payments until the situation with the balance of payments is stabilized;
- carrying out measures provided by Article 4 of this Agreement.

3.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lso be establish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included in yearly Protocol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 hereof.

4. A Contracting Party which applies quantitative restrictions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upon inqui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it with necessary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forms and possible terms of applying the mentioned restrictions.

5.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aspire to solve all question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way of consultations.

Article 4

Each Contracting Party will not allow re-exportation of goods with respect to exportation of whic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these goods originate from, applies measures of tariff and/or non-tariff regulation.

Re-exportation of such goods to third countries can be carried out only by written consent and on terms determined by the authorized body of

the State which i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se goods. In the event that this provision is not followed, a Contracting Party, whose national interests have been violated, shall have the right to unilaterally introduce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exportation of goods to the territory of the State which allowed a non-sanctioned re-export. And currency earnings from such re-exportation shall return to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relevant goods.

Re-exportation shall mean that goods originated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 hereof, are expor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utside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latter with the aim of exporting them to a third country.

Article 5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on a regular basis, exchange information on customs issues, as well as customs statistics. The relevant authorized bod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rdinate a procedure of exchanging such information and shall conclude a relevant agreement.

Article 6

1.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take measures to bring together the levels of customs duty rates applied in trade with third countries. For these purposes they have agreed to conduct regular consultation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of all exceptions to the current customs tariffs which are unilaterally applied.

Article 7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ider unfair business practice in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at is in particular expressed in the following:

- in concluding agreements between enterprises, their associations aimed at impeding or restricting competition, or violating conditions for the competition o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 in carrying out actions with the help of which one or several enterprises use their dominant position restricting competition on the whole or considerable part of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8

In carrying out measures of tariff and non-tariff regulation of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for exchanging statistical information and carrying out customs procedures,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apply a single nine-digit Goods Nomenclature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GNFEA) based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s and the 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for own need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f necessary, carry out the development of the Goods Nomenclature beyond nine-digits.

The Russian Party shall carry out the maintenance of a standard copy of the Goods Nomenclature through the available representative offices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at period of time until the Kyrgyz Party announces its independent maintenance of the standard copy.

Article 9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not use the State aid in the form of subsidies to enterprises or in any other form if such State aid would cause violation of normal economic conditions o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0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hat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of transit freedom shall be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ocess of their attachment to the system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and cooperation.

In this connec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a free transit, via its territory, of goods originated in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or third countries and intended for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any third countr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exporters, importers or carriers with all means and services available and necessary to provide transit on terms not worse than those on which the same means and services are provided to their own exporters, importers or carriers or to exporters, importers or carriers of any third country.

Tariffs on transit of any kind of transport including tariffs on loading and unloading works will be economically substantiated and will not exceed

[부록8]

normal working expenses, including a reasonable rate of profit.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not require payment for services on warehousing, transshipping, storing and transporting goods in currency of any third country.

Article 11

Nothing herein must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measures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to protect its vital interests or which are undoubtedly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it is a signatory, if these measures concern:

- information damaging interests of national defence;
- trade in weapons, ammunition and military equipment;
- investigations or production connected with needs of defence;
- deliveries of materials and equipment used in nuclear industry;
- defence of public moral and public order;
- protection of industrial or intellectual property;
- gold, silver or other precious metals and stones;
- protection of people's health, animals and plants.

Article 12

In order to carry out an agreed policy with respect to third countries in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on the Coordination of Work on the Issues of Export Control of Raw Material, Materials, Equipment, Technologies and Services, which can be used to create weapons of mass ex-

termination and rocket means for its delivery, as of 26 June 1992,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create an Intergovernmental Coordinating Council for Export Control as part of Heads of the national state bodies of export control with the Working Office based on the Export Control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functions of the Intergovernmental Coordinating Council shall include the approval of single control lists, consideration of facts of violation of export control requirements, preparation of suggestions on introducing and cancelling sanctions, and other issues of export control.

Article 13

For the purposes of developing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render assistance in the participation in trade fairs and exhibitions held in one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14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place provisions of the agreements earlier conclud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at extent to which the latter is either not compatible with the former or is identical to them.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struct their competent bodies to prepare and sign a relevant Protocol on this issue.

Article 15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actions of the Agreements concluded earlier by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third countries.

Article 16

Nothing herein shall prevent the Contracting Parties from carrying out relations, which do not contradict the objectives and terms hereof, with third countries and their associ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17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hereof will be settled by way of negotiations.

Article 18

To carry out this Agreement and work out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trad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establish a joint Russian-Kyrgyz Commission.

Article 19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hat the Republic of Kyrgyzstan may establish its trad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its trad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Republic of Kyrgyzstan. The legal status of these trade representative offices, their functions and lo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a separate Agreement.

Article 20

Any State may, provided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approve this, join this Agreement 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will be agreed between a

joining state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1

The Protocol on exceptions to free trade regime to be signed by the Parties within one-month period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Agreement shall be integral part hereof.

Article 2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nd supplemented by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mentioned amendments and supplements must be in writing.

Article 23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from the date of exchanging notifications on the fulfillment by the Contracting Parties of all intergovernment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is Agreement to come into force.

The Agreement shall be invalid upon the expiration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a written notific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DONE in the city of Bishkek on 8 October 1992, in duplicate. Each is in Kyrgyz and Russian. And both texts shall be equally valid.

ANNEX

Protocol on Exceptions to Free Trade Regime to the Agreement on Free Trade between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yrgyz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of 8 October 1992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agreed as follows:

Article 1

Exceptions provided by Article 1 of the Agreement on Free Trade between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yrgyz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of 8 October 1992, (furth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Free Trade) shall apply to:

- goods subject to the Kyrgyz legislation on export tariff/and licensing of exportation of goods (works, services) which is in force at the moment of customs clearance of goods during their exportation from the Kyrgyz Republic to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moment of signing this Protocol the following documents are in force: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Kyrgyz Republic “On som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private entrepreneurship”, as of 25 March 1994, and No 613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Temporary Customs Tariff of the Kyrgyz Republic”, as of 30 December 1993);

- goods subject to the Russian legislation on export tariff and licensing and quoting of exportation of goods (works, services) which is in force at the moment of customs clearance of goods during their ex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Kyrgyz Republic (at the moment of signing this Protocol the following documents are in force: No 1103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pproving export customs duty rates and a schedule of goods with respect to which they are applied”, as of 30 October 1993, No 854 Resolu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licensing and quoting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works, service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of 6 November 1992, and No 1102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measures for liberalization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with further amendments).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inform each other of all changes to domestic legislation on the aforementioned issues.

Article 2

With respect to goods to which tariff and non-tariff export restrictions are applied in compliance with Article 1 of this Protocol, the Parties shall provide the MFN treatment to each other with respect to:

- customs duties and levies charged in exportation of goods, including the methods for charging such duties and levies;

[부록8]

- procedures and rules relating to exportation (importation) of goods including those which relate to their customs clearance, transit, warehousing and transshipment;
- taxes and other domestic levies of any kind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with exported (imported) goods;
- rules on selling, purchasing, transporting, distributing and using goods in the domestic market;
- ways and transfer of payments.

Article 3

The provisions of Article 2 hereof shall not be applied to advantages and privileges granted by each of the Parties to:

- third countries with the purpose of creating a customs union or a free trade area, or as a result of creating such a union or such an area;
-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rticle 4

The Parties shall not impose export duties on goods delivered for the national needs on a mutually agreed basi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rade Economic Cooperation in 1994.

Article 5

This Protocol shall be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on Free Trade.

The Protocol on Exceptions to Free Trade Regime between the Republic of Kyrgyzstan and the Russian Federation, as of 26 December 1992, shall be invalid on the day when this Protocol comes into force.

Article 6

This Protocol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it is signed and shall be valid until the new Protocol provided by Article 1 of the Agreement on Free Trade comes into force.

Done in the city of Moscow on 12 July 1994, in two originals. Each is in the Kyrgyz and Russian languages. And both of the texts shall be equally valid.